

연구보고서 2007-05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研究陣》

연구위원 :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제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	11
제2절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1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제3장 우리나라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분석	27
제1절 자율방범 활동 개관	27
제2절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29
제3절 분석 결과의 요약	59
제4절 자율방범대 현행 지원 실태 분석	60
제4장 일본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분석	66
제1절 방범 자원단체의 활동실태 분석	66
제2절 자율방범활동 사례 분석	68
제3절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조직과 활동	87
제4절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89
제5절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 실태 분석	90
제5장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면접 결과 분석	92
제1절 면접대상자 및 범위	92

제2절 운영예산과 금전적 보상에 관한 분석 결과	92
제3절 지역주민 참여유인에 대한 분석 결과	93
제4절 경찰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9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95
제6장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96
제1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96
제2절 예산문제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	98
제3절 경찰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100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102
제5절 기타 활성화 방안	102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5
참고문헌	107
부 록	110

< 표 목 차 >

<표 2-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조	11
<표 2-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참여 유형	19
<표 3-1> 연도별 자율방범대 현황	28
<표 3-2> 연도별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	29
<표 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3-4>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협력단체 필요성	32
<표 3-5>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	33
<표 3-6>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역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33
<표 3-7>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	34
<표 3-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6
<표 3-9>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37
<표 3-10>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38
<표 3-11>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39
<표 3-12> 자율방범대를 알게 된 계기	40
<표 3-13> 자율방범 활동 참여 횟수	40
<표 3-14> 1회 자율방범 활동 소요 시간	41
<표 3-15> 자율방범 활동 시간대	41
<표 3-16> 자율방범 활동 시 복장	42
<표 3-17> 자율방범대원의 통일된 유니폼 착용 필요성	42
<표 3-18> 자율방범 활동 시 방범장비(호루라기, 방범봉, 가스충 등) 소지여부	43
<표 3-19> 경찰과의 합동 순찰 활동 정도	43
<표 3-20> 자율방범 활동 시 신체적 위협 정도	44
<표 3-21> 자율방범 활동을 통해 지역 범죄정보에 대한 습득 정도	44
<표 3-22> 자율방범 활동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정도	45
<표 3-23> 자율방범 활동 후 보람과 긍지를 느낀 정도	45
<표 3-24> 자율방범 활동 후 가족과 이웃의 존경을 받은 정도	46
<표 3-25> 자율방범대장의 역할 중요 정도	46
<표 3-26> 자율방범대장이 지녀야 할 요건	47
<표 3-27>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신뢰감	48
<표 3-28>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한 경찰의 인정 정도	48
<표 3-29> 자율방범 활동의 참여 권유 정도	49

<표 3-30>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처	49
<표 3-31> 자율방범대 부족 경비 조달 방법	50
<표 3-32> 자율방범대 별도 사무실의 형태	50
<표 3-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2
<표 3-34> 3년간 거주지역의 범죄발생 정도	53
<표 3-35> 지역의 특성	54
<표 3-36>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54
<표 3-37>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인식 정도	56
<표 3-38>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 인정 정도	57
<표 3-39>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 예산 지원 주체	57
<표 3-40>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의 주체	58
<표 3-41>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61

< 그림 목 차 >

<그림 4-1> 전국방범협회연합회조직도	87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최근 선진 각국은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의 치안자원을 비롯한 국가내의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삶의 질’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국가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관료적 조직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찰을 비롯한 공적인 치안조직만으로는 범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범죄문제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치안대상의 특색에 따른 탄력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치안 유지에 민간의 치안자원들이 활용되면서 제한적이지만 공적 치안의 법적 지위가 가미되어¹⁾ 공적 치안(public policing)과 사적치안(private policing) 그리고 양자의 성격이 혼합된 혼성적 치안(hybrid policing)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 치안지수라 할 수 있는 총 범죄 발생현황에 있어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주관적 치안지수라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바라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치안의 제 일선에서 사회질서유지에 여념이 없지만, 늘어나는 치안수요와 범죄원인의 다양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대응에 민간의 치안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치안체제를 이루어야만 사회치안지수

1) 우리나라도 민간의 치안기구들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공적 치안의 법적 지위가 가미된 치안제도가 존재한다. 그 예로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원제도를 들 수 있다.

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치안자원으로는 자율방범대와 다양한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언론·방송매체, 민간경비산업 등이 있다. 경찰은 다양한 민간 치안자원들을 연계하여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지구대와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범죄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전영실, 2005: 21).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아무런 대가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²⁾.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방범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³⁾.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최근 각종 시위현장에서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현상이 민생치안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민생치안의 기초 단위이다. 성공적인 민생치안 확보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을 둔 자율방범대는 민생치안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전과 안심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은 지역사회 경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방범활동이 주민 생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일본은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국에 2만 6천여개의 자율방범단체가 있고, 참가 인원은 약 164만8천명에 달한다. 전국에 47개 지역방범협회가 있고, 이들을 총괄하는 「전국방범협회연합회」가 있다. 일본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회의적 태도, 지역주민간의 약한 결속력 등이 있을 수 있다(Grinc, 1994: 465; 전영실, 2005: 21).

3)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이성식(2001), 임창호(2002)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일본의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실태분석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일본의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자율방범대 운용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경찰자율방범대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학자, 현직 경찰 간부와 실무자로서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바가 있는 경찰관, 현재 자율방범대장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의 주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대 참여 유인 방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방법, 설문조사 방법, 심층면접 방법을 원용한다.

먼저, 제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 지역사회 경찰제도의 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태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자료 및 현황, 일본의 주민 자율방범활동 사례 등은 문헌연구 방법과 인터넷 자료 등에 주로 의존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제2장 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적 배경의 고찰과 기존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제1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

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하여 명확히 개념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몇몇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스티팩(Stipak)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업무 협동과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공동 책임을 증대시키는 관리전략이다.”라고 정의하였다(Stipak, 1994: 115). 트로야노비치(Trojanowicz)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무질서, 이웃환경 등과 관련된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과 시민이 창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활동 철학이다.”라고 하였다(Robert Trojanowicz, 1998: 3).

코드너(Cordner)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조를 <표 2-1>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 2-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조

구분	공통요소
철학	- 주민참여 · 경찰기능 확대 · 인격적 봉사
전략	- 근무방식 개선 · 예방노력 확대 · 구역책임 강화
전술	- 민경제휴 · 민경협력 · 문제해결
관리	- 조직개편 · 지침정비 · 질적 평가

※ 자료: 이황우외, 『경찰학 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64. 재인용.

경찰활동에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일종의 경찰이라는 공식적 사회통제기관과 비공식화되어 그 역할이 거의 희미해진 지역사회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범죄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종의 과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이끌어내어 이를 현대경찰 활동에 적용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최선우, 1999).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해결하여 경찰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새로운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 경찰관의 분권화, 지역주민과의 친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경찰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응렬, 2005: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무질서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되, 종래와는 다른 방법인 경찰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김충남, 2005: 99).

결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경찰력만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1970년대의 연구평가들은 범죄와 싸우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주로 비효과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범죄예방에서의 주민참여와 자기보호적 행위의 채택은 경찰활동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사회무질서 통제, 안전감에 대한 인식강화 등 질서유지기능이 범죄통제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회무질서 통제와 안전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강한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Zhao et al., 2002: 42; 전영실, 2005: 26-27). 범죄예방에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실제 범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중심적인 것이 된다(Grinc, 1994: 440; 전영실, 2005: 27).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성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비교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객만족의 운영 철학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경찰활동, 즉 경찰운동을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고 운영해 간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 역할의 변화이다. 경찰역할은 주로 상급기관이나 상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법을 피동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을 위한 조언자(advisor), 조정자(coordinator), 촉진자(facilitator) 그리고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파트너쉽이다. 즉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주민과 경찰이 공동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 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경찰의 실적 평가에서도 단지 범인 검거수나 검거율 등의 이른바 건수주의 혹은 양적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된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질적 기준을 중시한다(정진환, 2006: 294-295).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범죄통제 전략의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감 증진, 범죄예방기술의 확대, 지역사회 개념의 재확인, 지역주민의 준경찰로서의 역할수행 등이 있다(Champion & Rush, 1997: 3; 최응렬, 2005: 11-12). 그리고 그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국가이웃도보순찰센터(National Neighborhood Foot Patrol Center)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Trojanowicz, Kappeler, Gaines & Bucqueroux, 1998: xi-x iii; 최응렬, 2006: 12-13).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 및 범죄두려움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이며 전략이다. 둘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모든 경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과 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지역사회 담당경찰관(CPO: Community Policing Officer)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해진 담당구역의 주민과 매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담당경

찰관(CPO)은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문제, 범죄두려움, 무질서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 또한 공공질서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수동적인 사후 범죄대응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전 범죄예방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범죄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피해에 취약한 청소년, 노인, 극빈자 등을 보호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술 및 장비의 혁신을 병행한다. 아홉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내부적 결합에 기초한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 내부의 원활한 의사교환 등을 통하여 지역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열 번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분권화·개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식 강화,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감 강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및 범죄두려움 감소, 지역의 무질서 감소, 이웃 간의 결속력 강화,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경찰활동 형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순찰체제의 개편, 경찰의 책임성 강화, 명령체제의 분권화 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Rosenbaum, 1987: 110; 최응렬: 14-18).

최선우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를 시민의 이익과 경찰의 이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시민의 이익으로는 범죄예방의 효과, 경찰에 대한 시민감시 및 책임의 증대, 경찰 신규채용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자의 요구로의 변화 등을 지적하였다. 경찰의 이익으로는 정치적 이익, 시민의 지원, 경찰과 시민간의 공동합의 구축, 경찰 사기의 증대, 경찰관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 경찰의 전문인적 위상 확립, 경찰의 능력개발 등을 지적하였다(최선우, 2003: 310-322).

4.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측면에서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개선활동, 도보순찰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경찰은 범죄대처보다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협력자로서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을 갖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게 되었다(최인섭, 1994: 25).

우리나라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소개된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이다. 그 후 1990년대 후반기 까지 탐색기를 거쳐 2000년대부터 다양하게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유형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시민경찰학교, 생활치안 간담회, 자율방범대 등이다.

먼저,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방안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부천시의 CPTED 시범적용을 위하여 경찰관 4명과 관련교수 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2005년 7월부터 1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을 제작하여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판교신도시 건설에 적용토록 하였다(경찰청, 2006: 174).

2000년부터 도입된 시민경찰학교는 경찰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교육기간은 교육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별로 2~5주에 걸쳐 15~40시간씩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체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및 경찰관과 함께 지역 범죄예방에 관하여 토의하고 지구대, 112 신고센터, 유치장 및 각종 경찰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하였다. 2005년에는 전국 69개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여 모두 2,426명이 수료하였다(경찰청, 2006: 176).

경찰에서는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각종 치안시책에 반영하고자 경찰과 경찰협력단체, 시민단체 등을 초청한 생활치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청별로 개최하여 경찰협력단체의 치안참여 활성화, 절도예방 종합대책 등 체감치안 향상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과 경찰혁신 사례 등 경찰 역점사안을 홍보하였다. 2005년에는 14개 지방청별로 경찰 284개 관서, 경찰협력단체

768개, 시민단체 98개 등 총 1,150개 단체가 참여하였다(경찰청, 2006: 178).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하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천836개 조직에 9만8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8천67건의 범죄 신고와 3천318명의 형사범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06: 180-181).

제2절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과 더불어 치안서비스에 대한 공동생산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공동감시(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경찰에 범죄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는 널리 알려져 있다(Stephen, 1998: 178; 최선우, 1999: 29-30).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경찰조직은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서비스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경찰서비스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각 지역마다 방법자문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등 협력단체의 운영을 통한 자율방범활동 등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치안서비스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대체로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출소업무의 협조 및 보조적인 활동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선우, 1999: 31-3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에 대해서 브루드니(Brudney)는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기관의 관료와 그리고 시민개인이나 시민집단에 의한 합동적인 생산을 공동생산'이라 정의하고 있다(Brudney, 1984: 466). 카이저(Kiser)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똑같은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그것을 공동생산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공동생산은 서비스 기관의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Kiser, 1984).

김인은 경찰서비스와 쓰레기수거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공공서비스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공동생산을 주요한 독립변수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는 공동생산을 '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관료와 시민 개인이나 혹은 시민집단에 의한 서비스의 합동적 생산'이라고 규정하여 공동생산을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인, 1986). 정윤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공동생산을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전달함에 있어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상호협동노력'이라고 정의하고, 경찰과의 적극적 협조는 물론 소극적 협조만 이루어지는 활동도 공동생산 개념에 포함하고 있어 광의로 파악하고 있다(정윤수, 1993).

결국 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비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생산은 좁게는 정부 서비스 전달 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 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하여, 넓게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든 없던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 활동에의 모든 참여를 의미한다(김인, 1997). 최선우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요인을 범죄문제의 심화, 경찰력의 한계, 시민의 자경의식 증대, 거대 사적재산가의 증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등을 들고 있다(최선우, 1999).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행하고 있어서,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임창호, 2002: 288).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자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안

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 지역에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경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은 개인적인 활동과 집단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인 경찰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개인적 생산과 집단적 생산이라는 한 차원과 적극적 생산과 소극적인 생산이라는 또 다른 한 차원을 교차 분류하여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⁴⁾ 즉, 개인적·소극적 공동생산, 개인적·적극적 공동생산, 집단적·소극적 공동생산,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정윤수, 1993; 김인, 1997; 최선우, 1999).

첫째, 개별적·소극적 공동생산이란 경찰과 관련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방범장비의 휴대, 이중자물쇠 등 잠금장치의 설치, 각종 침단경보장치의 설치, 자녀에 대한 방범교육의 실시, 귀가 중인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활동이다.

둘째, 개인적·적극적 공동생산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활동이지만 범죄피해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와 아울러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활동과 같이 주로 범죄정보제공과 관련된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다. 물론 이러한 신고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감시활동을 펴서 수상한 자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 활동은 시민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오랜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경찰의 범죄통제능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셋째, 집단적·소극적 공동생산은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찰과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말한다. 자체적인 순찰활동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범대책을 협의하여 대책을 세운다든지, 공동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의 협의는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주

4) Rich(1981: 62)는 공동생산을 능동적인 활동과 수동적인 활동으로 나누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능동적인 활동은 다시 개별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나누어 공동생산을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동생산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능동적이며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활동이다(김인, 1997: 81 재인용).

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에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김인, 1997: 81).

넷째,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은 집단적 차원에서 경찰과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자율방법대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의 협조하에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직접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은 물론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별 주요 측정변수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참여 유형

공동생산 유형	공동생산의 예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	방범기기 설치, 방범장비 소지, 자녀에 대한 방범예방교육, 귀가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개인적 적극적 공동생산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 법정에서의 증언
집단적 소극적 공동생산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협의, 주민 공동의 경비원 고용, 주민간 범죄정보 공유
집단적 적극적 공동생산	자율방법대, 지역내 경찰협력단체 등

※ 자료 : 김인, 1997: 87; 최선우, 1999: 68. 재구성.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인 자율방법대 활동은 자신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의 억제와 감소, 시민들의 안전감 등의 편익이 생겨나는 공공서비스 비배제성이 적용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편익을 누리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언제나 적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소극적 활동에 비해서도 훨씬 적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즉 공동생산의 문제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적극적공동생산인 자율방법활동이다(김인, 1997: 82).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자율방법활동은 시민들이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참여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유형의 활동을 넓은 의미

에서 자율방법활동이라 볼 수 있고, 집단적·적극적인 자율방법활동인 주민들의 자율방법대 활동만을 좁은 의미에서의 자율방법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자율방법활동이라 부르는 것은 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김인, 1997: 8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자율방법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로는 자율방법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율방법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전영실, 2005), 그리고 일반시민과 자율방법대원,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방법대에 대한 인식 및 실태과약을 한 연구(김상길, 2003; 심재형, 2002)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법활동 참여요인과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임창호, 2002; 이성식, 2001; 김상묵·송건섭, 1998). 또한 자율방법대의 현황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소선영, 1999)와 일반시민과 자율방법대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율방법활동이 경찰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인, 1997) 등이 있다.

1. 자율방법대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자율방법활동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참여라 할 수 있다. 즉 치안문제를 전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위의식에 따라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내 지역의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방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자율방법대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활동 실태나 방법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역주민 자율방범활동 참여요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는 개개의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자율방범대 참여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자녀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영실의 연구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은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80%대 였다. 소득수준은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는 중간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70%대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주택가와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0%대로 나타나서 지역 거주기간과 자율방범활동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참여 동기로는 '동네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활동을 돕기 위해서',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싶어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재산보호를 위해'의 순이었다. 자율방범활동의 참여 동기가 실제적 이익보다는 정서적 이유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영실, 2005).

임창호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참여주민 중 95.5%를 차지하고, 연령은 50%가 4,50대 이며, 43.8%가 각종 상점경영자이고, 27.5%가 서비스업자였다. 소득의 경우 참여주민들의 소득이 비참여주민보다 높았고, 교육수준은 64.9%가 고졸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비참여주민보다 적었다. 자녀수는 참여주민의 자녀수가 비참여주민보다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상가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주민들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임창호, 2002).

김상묵과 송건섭은 경상북도 경주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경찰관의 업무태도, 경찰활동의 신뢰성, 범죄 안전성 등이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찰관의 업무태도, 경찰활동의 신뢰성, 범죄 안전성,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등이며, 범죄 대처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찰활동의 신뢰성, 범죄 피해,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경찰관의 업무태도 등이다(김상묵·송건섭,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 높은 연령층, 소득수준에 있어 중상층, 높은 교육수준, 자녀를 둔 기혼자, 자기집 소유자가 지역 범죄예방활동에 주로 참여한다고 보아 왔다(Lavrakas and Herz, 1982: Greenberg et al., 1985: Shernock, 1986).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들도 있다. 즉 남성들보다는 여성이(Bennett, 1989: Lab, 1990), 젊은 층이(Smith and Lab, 1991)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참여하며, 혹은 연령, 계층, 교육수준은 범죄예방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Bennett, 1989; 이성식, 200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즉 주민들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욱 안전하게 느낀다. 또한 주민들 간의 친밀성은 경찰서비스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율방범대 활동의 효과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김인, 1997).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연구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들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따른 주요 요인들로는 지역의 범죄 수준, 지역경제수준, 지역의 이질성과 안정성 등이 있다(Lavrakas et., 1980: Greenberg et al., 1985: Skogan, 1988; 이성식, 2001).

최근의 견해에 따르면, 범죄수준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의 관계는 지역내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iska and Warner, 1991: Bellair, 2000). 예를 들면, 지역내 거리에서 일어나는 노상강도 등의 범죄는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지역활동을 위축하지만, 가구침입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 활동에의 참여를 자극한다고 보아 범죄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이성식, 2001: 118).

소득 수준에 있어 중상층 지역이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인구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사한 동질적인 지역에서, 또한 그 지역에서 이주율이 낮은 안정적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왔다(Greenberg et al., 1985; Skogan, 1988).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 성원들 간의 통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이성식, 2001).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지역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지역 결속력과 지역주민들 간의 친밀감,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에서 크게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Lavrakas et al., 1980; Rohe and Greenberg, 1982; 김인, 1997). 또한 범죄예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 내의 다른 다양한 조직체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avrakas and Herz, 1982; Greenberg et al., 198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성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지역사회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으며, 또한 조직화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모임과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성식, 2001: 119).

또한 체계적인 조직 하에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가 있고, 충분한 자원이 동원되며,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 혹은 지역에서 성원들의 집합협력정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의 참여 가능성과 그것으로 결과 될 전체 이익에 견주어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충분한 자원을 갖춘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조직에서는 다른 성원들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참여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았다(Marwell and Oliver, 1993; 이성식, 2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성식은 지역주민들의 방법순찰활동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에의 집합협력도 그 지역의 성원들이 얼마나 결속되어 있고 상호유대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지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다른 지역 조직활동도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민 방법순찰과 같은 성원들의 집합협력에의 참여는 개인의 다른 동기보다도 지역 공동체의식, 지역주민 서로를 위한 지역 집합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의 방법순찰활동은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관계,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찰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지역방법 순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주 활동 중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이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가질 때 경찰을 보조하여 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성식, 2001: 116-121).

2.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 중 전영실의 연구에서는, 첫째,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① 자율방법대의 분명한 목표수립, ② 자율방법대원의 자격요건 규정, ③ 자율방법대의 활동내용 규정, ④ 활동시간의 다양화와 활동시간의 증가, ⑤ 조직의 소규모화, ⑥ 자율방법대원의 통일된 유니폼 착용, ⑦ 자율방법대 조직간의 교류 활성화를 들었다. 둘째, 자율방법활동 참여자의 증원방안으로는 ① 참여자 구성의 다양화, ② 경찰 홈페이지 활용 등 모집 방법의 다양화, ③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 유도, ④ 범죄예방활동 집단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통합 등의 정서적 측면의 강조, ⑤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참여 활성화 등이다. 셋째, 경찰의 지원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의 의무화, ② 자율방법대와의 협력관계의 강화, ③ 자율방법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향상을 위한 경찰의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① 자율방법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사기업이나 공무원, 경찰관 채용 시 사회봉사경력 인정 및 가산점 부여, ② 자치단체별 재정적 지원이나 상해보험가입이 모든 대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 ③ 자율방법대에 대한 뉴스레터 발간이나 캠페인 등의 홍보, ④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지역주민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②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의 배경원인을 다루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③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전영실, 2005).

김창호는 자율방법대 참여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참여주민을 좀 더 다양화 하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 유인할 방안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율방법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며, 각종 상점경영자가 43.8%이고, 그 다음으로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목욕업, 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자가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방법대 참여 주민들이 야간 순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방법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자율방법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임창호, 2002).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 방법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물질적 보상, 칭찬, 사회적 명예, 사회경험 등 어떤 개인적 보상이라는 동기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위험부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와 같은 개인적 부담으로 그 참여여부가 결정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방법순찰로 얻는 개인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각종 유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이나 소요경비의 지원, 사회적 경력 인정, 표창, 순찰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적절한 시간 배분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김인, 1997).

전영실은 자율방법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득으로는 사회봉사의 보람이나 긍지, 주민과의 친밀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획득 등의 효과를 들고 있다(전영실, 2005).

지역주민들의 방법활동 참여요인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이성식은 지역유대와 조직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있게 되는 지역주민들 간의 통합도와 공동체의식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성원들의 책임의식에 의해 보다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동기보다는 불편함과 손실이 있어도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참여한다는 지역 차원의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동기는 지역유대 그리고 지역의 조직화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역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지역 차원의 노력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성식, 2001: 129).

전영실의 연구에서는 자율방법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적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하여, 동네 주민간의 유대강화, 지역의 범죄감소, 지역의 청소년 비행 감소에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전영실, 2005).

소선영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자율방범대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율방범대원은 자원봉사자들이므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들의 근무에 대하여 합동 근무를 하면서 지역 방범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주민 중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활용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것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주민의 협력을 구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과의 의사전달의 통로를 확장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무감독과 평가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소선영, 1999).

제3장 우리나라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자율방범 활동 개관

1. 자율방범대 연혁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방범대 활동은 1953년 휴전 이후 날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동(洞)·리(里) 단위로 실시한 야경제도에서부터 유래되었다. 1962년 정부는 야경제도를 주민이 방범비를 부담하는 유급 방범원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방범원 운영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리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하였다. 1963년에는 주민자율방범운동 활동을 제도화⁵⁾하여 주민은 가구당 방범비를 동·리사무소에 납부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종전의 각 동단위로 구성되었던 방범위원회를 각 지·파출소 단위로 개편하고 경찰서 단위에는 방범협의회가 구성되었다. 1973년에는 경찰에서 방범대원의 근무감독을 담당하고, 방범위원회에서는 방범비의 징수와 지출을 담당하며, 각 방범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방범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1976년에 들어서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방범원을 30%씩 대폭 증원토록 하였다. 이어 1978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범원들의 급료를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범원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제도가 아니었으며 전문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989년 말 7,259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매년 5%씩 감소하여 1991년 말 6,400명에 이르다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 자율방범대는 1990년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별로 존속되고 있던 조직을 파출소별로 재정비하여 인원도 확충하면서 체계화하였다.

5) 1963년 5월 19일(내무부 치안국(내치보 2033-3059호)의 방범위원회 운영요강에 의하면 “날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활적인 국민방범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당시의 사회질서와 범죄예방은 경찰 단독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경찰과 지역 주민이 합동으로 방범조직을 구축하였다. 그 후 방범위원회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 동단위에서 직장에도 조직이 확대되었다(서진석외, □□한국경비산업발전사(1)□□, 2003, 서울: 백산출판사, p.6.

1996년에는 자율방범대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조직의 명칭을 oo파출소 자율방범대로 통일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임창호, 2002: 21-22; 전영실, 2005:77-78). 그러나 현재는 경찰에서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자원봉사적 성격을 띤 자율단체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법규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2003년 8월부터 일선경찰이 파출소 단위에서 지구대체제로 개편되면서, 파출소 별로 1개씩 조직되었던 자율방범대가 지구대별로 복수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법의식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방법활동을 수행하면서 준경찰력으로 경찰의 보조적 기능을 충실해 해왔다.

최근에 들어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경찰력 부족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자위의식이 변화하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 자율방범대 현황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하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2006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천889개 조직에 9만8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원수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연도별 자율방범대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직수	3,884	3,816	3,508	3,471	3,419	3,419	3,621	4,172	4,148	3,836	3,889
인 원	95,000	92,000	101,000	97,000	92,000	92,000	97,000	111,000	105,000	98,000	98,749

※ 자료: 연도별 『경찰백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은 2006년 한 해 동안 6천277건의 범죄 신고와 2천964명의 형사범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경찰청, 2007). 그러나 1999년부터 범죄 신고건과 형사범 합동 검거 실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절도범죄와 폭력범죄 등 형사범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매년 형사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매년 저하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표 3-2> 연도별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

(단위: 건, 명)

구 분	범죄신고	형사범 합동 검거			
		계	강·절도	폭 력	기 타
1996	6,652	5,326	189	1,487	3,650
1997	6,580	5,907	145	1,476	4,281
1998	15,526	15,338	3,558	4,846	6,934
1999	34,422	29,381	2,767	11,312	15,302
2000	26,972	22,269	728	8,895	12,646
2001	27,791	23,891	809	9,139	13,943
2002	23,838	17,085	271	5,876	10,938
2003	11,076	11,134	226	4,088	6,820
2004	8,669	7,195	89	2,696	4,410
2005	8,067	3,318	106	1,046	2,166
2006	6,277	2,964	104	906	1,954

※ 자료 : 연도별 「경찰백서」.

제2절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경찰관과 자

울방법대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가능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경우, 서울의 강남경찰서와 양천경찰서, 인천 계양경찰서, 경기도 용인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충남 서천경찰서, 전남 보성경찰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율방법대원과 일반시민은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 인원은 경찰관 134명, 자율방법대원 94명, 일반시민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3개 조사대상 공통으로 우리나라 치안상태의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에게는 경찰의 협력단체의 필요성, 자율방법활동의 필요성, 자율방법활동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자율방법대원들에게는 자율방법활동 참여 이유, 참여 동기, 주민들이 자율방법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자율방법대에 대한 인지 매체, 참여정도, 활동소요시간, 활동시간대, 유니폼의 필요성, 방법장비의 소지여부, 경찰과의 합동순찰정도, 신체적 위협 정도, 지역범죄 정보의 습득 정도, 활동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정도, 활동 후 정신적 만족 정도, 자율방법대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및 대장이 지녀야할 요건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일반시민들에게는 범죄피해 경험, 거주지역의 특성,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인지도·효과성·관심도·참여도·유관기관의 지원 및 관심도·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대상자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을 하여 다수 의견별로 정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7년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2.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결과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경찰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87.3%이고, 여성이 12.7%로 남성이 월등히 많다. 연

령별 분포는 30대가 39.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40대 33.6%, 50대 이상 16.4%, 20대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대재)이 45.5%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졸 26.1%, 고졸 25.4%, 대학원졸(재학) 3.0% 순이다.

계급별로는 경장이 35.8%이고, 경사 30.6%, 경위 15.7%, 순경 12.7%, 경감 4.5%, 경정 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2.1%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10년 미만 27.6%,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8.7%, 5년 미만이 16.4%, 20년 이상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범 주	빈 도	%
성 별	남성	117	87.3
	여성	17	12.7
연 령	20대	14	10.4
	30대	53	39.6
	40대	45	33.6
	50대 이상	22	16.4
학 력	고졸	34	25.4
	전문대졸	35	26.1
	대졸(대재)	61	45.5
	대학원졸(재학)	4	3.0
계 급	순경	17	12.7
	경장	48	35.8
	경사	41	30.6
	경위	21	15.7
	경감	6	4.5
	경정	1	0.7
근무 연수	5년 미만	22	16.4
	5년 이상~10년 미만	37	27.6
	10년 이상~15년 미만	25	18.7
	15년 이상~20년 미만	43	32.1
	20년 이상	7	5.2
합 계		134	100

2)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협력단체 필요성

우리나라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협력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65.6%의 경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경찰 협력단체의 확대는 책임전가, 민경유착으로 인한 부패, 정치권과의 결탁, 공권력의 변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은 이제 경찰만의 역할로 한정하여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찰 협력단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표 3-4>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협력단체 필요성

	빈 도	%
매우 필요하다	31	23.1
비교적 필요하다	57	42.5
보통이다	25	18.7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10	7.5
매우 필요하지 않다	11	8.2
합 계	134	100

3)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찰관이 전체 조사대상 중 6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찰관은 15.7%를 차지하였다. 앞의 1)과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동반자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

	빈 도	%
매우 필요하다	37	27.6
비교적 필요하다	54	40.3
보통이다	22	16.4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11	8.2
매우 필요하지 않다	10	7.5
합 계	134	100

4)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역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역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29.8%가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고, 30.6%가 비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율방범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협력단체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역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빈 도	%
매우 효과적이다	9	6.7
비교적 효과적이다	31	23.1
보통이다	53	39.6
비교적 비효과적이다	25	18.7
매우 비효과적이다	16	11.9
합 계	134	100

5)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

<표 3-7>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자율방범대에 지역범죄정보 등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0.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방법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3.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경찰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지역 범죄정보 등 정보제공과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방법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지역 범죄정보 등 정보제공	1(0.7)	30(22.4)	49(36.6)	35(26.1)	19(14.2)	134(100)
대원들에 대한 방법교육	1(0.7)	15(11.2)	60(44.8)	40(29.9)	18(13.4)	134(100)
대원들의 자부심 지원 필요성	47(35.1)	49(36.6)	21(15.7)	9(6.7)	8(6.0)	134(100)
경찰 자체 예산지원 필요성	49(36.6)	39(29.1)	20(14.9)	12(9.0)	14(10.4)	134(100)
모집과 관리상 경찰의 영향력	10(7.5)	39(29.1)	27(20.1)	41(30.6)	17(12.7)	134(100)

※ ()안은 %임.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71.7%의 경찰이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찰 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5.7%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찰의 관리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상호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의 입장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받은 결과 의견을 제안한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의견(27명 16명, 59.2%)이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지원해야 경찰과 더욱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경찰에 대한 이해심도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으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우수인력을 모집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지구대나 인근 지역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자치단체에서 합법적인 제도적 창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율방범대원들을 지역내의 경우회 회원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다. 자율방범대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합동순찰을 하는 등 협력치안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3.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8>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5.1%, 여성이 14.9%로 남자가 월등히 많다. 연령 분포는 40대가 6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22.3%, 30대 10.6%이며, 20대 2.1%, 60대 이상 1.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38.3%로 가장 많고, 대졸(대제) 24.5%, 전문대졸 18.1%, 고졸이하 17.0%, 대학원졸(재학) 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범 주	빈 도	%
성 별	남성	80	85.1
	여성	14	14.9
연 령	20대	2	2.1
	30대	10	10.6
	40대	60	63.8
	50대	21	22.3
	60대 이상	1	1.1
학 력	고졸 이하	16	17.0
	고졸	36	38.3
	전문대졸	17	18.1
	대졸(대재)	23	24.5
	대학원졸(대학원재학)	2	2.1
직 업	전문직	10	10.6
	사무·관리	5	5.3
	생산·관리	2	2.1
	판매·서비스	18	19.1
	공무원	3	3.2
	자영업	38	40.4
	기타	18	19.1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3	13.8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	16.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6	17.0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0	21.3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	14.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	14.9
	500만원 이상	2	2.1
동거 자녀수	0명	2	2.1
	1명	19	20.2
	2명	66	70.2
	3명	7	7.4
주거지의 특성	일반 주택가	29	30.9
	아파트 단지	51	54.3
	상가	13	13.8
	유흥가	1	1.1
합 계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40.4%로 가장 많으며, 판매서비스 19.1%, 전문직 10.6%, 사무관리 5.3%, 공무원 3.2%, 생산관리 2.1% 순이고, 기타 주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7.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4.9%, 500만원 이상이 2.1%를 차지하였다.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는 2명이 70.2%로 가장 많았고, 1명이 20.2%, 3명이 7.4%, 동거 자녀가 없는 대원이 2.1%를 차지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파트단지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주택가 30.9%, 상가 13.8%, 유흥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이유가 73.4%, 거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가 94.7%,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가 84.1%, 경찰의 방범활동을 돕기 위해서가 76.6%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혹은 관계기관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27.6%, 부정적인 답변이 33%가 나왔다.

<표 3-9>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나와 내 가족의 안전	38(40.4)	31(33.0)	17(18.1)	6(6.4)	2(2.1)	94(100)
거주 지역의 안전	58(61.7)	31(33.0)	4(4.3)	-	1(1.1)	94(100)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	26(27.7)	53(56.4)	12(12.8)	2(2.1)	1(1.1)	94(100)
경찰 혹은 관계기관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	5(5.3)	21(22.3)	37(39.4)	17(18.1)	14(14.9)	94(100)
경찰의 방범활동을 돕기 위해	25(26.6)	47(50.0)	20(21.3)	-	2(2.1)	94(100)

※ ()안은 %임.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자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경찰의 방법활동을 돕기 위한 이유도 76.6%의 높은 답변이 나온 것도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물질적 보상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각각 82%, 65%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에 비해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보상으로 명예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경험은 67%, 78.8%로 높게 나왔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물질적 보상보다 정신적으로 명예롭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표 3-10>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물질적 보상	1(1.1)	8(8.5)	8(8.5)	15(16.0)	62(66.0)	94(100)
명 예	39(41.5)	24(25.5)	22(23.4)	4(4.3)	5(5.3)	94(100)
나의 직업에 도움 기대	3(3.2)	5(5.3)	25(26.6)	20(21.3)	41(43.7)	94(100)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경험	29(30.9)	45(47.9)	14(14.9)	3(3.2)	3(3.2)	94(100)

※ ()안은 %임.

4)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간이 없어서가 60.6%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법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4.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위험부담에 대한 이유는 36.2%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23.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귀찮아서 소극적이라고 답변한 대원중에는 37.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41.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소극적일 거라고 답변한 대원은 전체 응답자 중 38.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3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 시간대의 적절한 분배와 개인적 부담의 감소 및 여가 시간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자율방법 활동이 방법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인책과 자율방법 활동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표 3-11>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시간이 없어서	10(10.6)	47(50.0)	29(30.9)	4(4.3)	4(4.3)	94(100)
방법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1)	17(18.1)	34(36.2)	17(18.1)	25(26.6)	94(100)
위험부담이 있어서	4(4.3)	18(19.1)	38(40.5)	19(20.2)	15(16.0)	94(100)
귀찮아서	11(11.7)	24(25.5)	20(21.3)	14(14.9)	25(26.6)	94(100)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8(8.5)	24(25.5)	26(27.7)	11(11.7)	25(26.6)	94(100)

※ ()안은 %임.

5) 참여 자율방법 활동 실태

(1) 자율방법대를 알게 된 매체

자율방법대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71.3%, 모집 현수막을 보고 16.0%, 홍보 전단을 보고 7.4%로 나타났다. 자율방법대의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유대감을 돈독히 한 다음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12> 자율방법대를 알게 된 계기

	빈 도	%
홍보 전단을 통해	7	7.4
모집 현수막을 보고	15	16.0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67	71.3
기 타	5	5.3
합 계	94	100.0

(2) 자율방법 활동 참여 횟수 및 시간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가 63.8%로 가장 많았고, 주 2회가 27.7%로 나타났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대의 대부분이 주 1-2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3> 자율방법 활동 참여 횟수

	빈 도	%
매 일	4	4.3
주 1회	60	63.8
주 2회	26	27.7
1개월 2회	2	2.1
기 타	2	2.1
합 계	94	100.0

1회 활동 소요시간은 3시간 이내가 38.3%, 4시간 이내가 27.7%, 2시간 이내가 2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방법 활동이 대부분 주 1회에 3시간에서 4시간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 활동은 정기적으로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심리적 안전감이 높아질 것이며, 범죄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 3~4회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4> 1회 자율방범 활동 소요 시간

	빈 도	%
1시간 이내	2	2.1
2시간 이내	23	24.5
3시간 이내	36	38.3
4시간 이내	26	27.7
5시간 이내	4	4.3
6시간 이내	1	1.1
기 타	2	2.1
합 계	94	100.0

(3) 자율방범 활동 시간대

자율방범 활동 시간대는 저녁 10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많은 72.3%를 차지하였고, 저녁 6시부터 10시 이전까지가 12.8%를 차지하였다. 침입 강도와 침입 절도의 경우 새벽시간에 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새벽 2시 이후의 방범활동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자율방범 활동 시간대

	빈 도	%
오전6시-12시 이전	1	1.1
오후 6시-10시 이전	12	12.8
오후 10시-새벽 2시 이전	68	72.3
기 타	13	13.8
합 계	94	100.0

(4) 자율방범 활동 시 복장 및 장비

자율방범 활동 시 복장에 대한 질문에 전체 87.2%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평상복에 자율방범대 모자나 완장을 차고 활동하는 대원이 11.7%로 나타났다.

<표 3-16> 자율방범 활동 시 복장

	빈 도	%
평상복에 자율방범대 모자나 완장을 차고	11	11.7
통일된 자율방범대 유니폼으로	82	87.2
기 타	1	1.1
합 계	94	100.0

복장은 통일된 유니폼 착용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 대원들이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율방범 활동을 인지시켜주며, 대원들의 소속감과 잠재적 범의자에 대한 범행 의욕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3-17> 자율방범대원의 통일된 유니폼 착용 필요성

	빈 도	%
매우 필요하다	85	90.4
비교적 필요하다	7	7.4
보통이다	1	1.1
매우필요하지 않다	1	1.1
합 계	94	100.0

자율방범 활동 시 호루라기, 방범봉, 가스총 등 방범장비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6.6%가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방범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물리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표 3-18> 자율방범 활동 시 방법장비(호루라기, 방법봉, 가스총 등) 소지여부

	빈 도	%
항상 지닌다	63	67.0
가끔 지닌다	9	9.6
상황에 따라 지닌다	18	19.1
항상 지니지 않는다	2	2.1
기 타	2	2.1
합 계	94	100.0

(5) 경찰과의 합동순찰 정도

자율방범대원이 순찰활동에 있어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41.5%가 가끔 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주 한다는 답변은 28.7%로 나타났다. 비교적 자주하지 않는다가 18.1%, 전혀 하지 않는다가 16.0% 응답하였다. 자율방범 활동이 경찰력의 보조적 기능으로 경찰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미가 크다면 경찰과 합동 순찰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합동 순찰을 통하여 범죄정보의 공유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상호간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9> 경찰과의 합동 순찰 활동 정도

	빈 도	%
매우 자주한다	9	9.6
비교적 자주한다	18	19.1
가끔 한다	39	41.5
비교적 자주하지 않는다	17	18.1
전혀 하지 않는다	15	16.0
합 계	94	100.0

(6) 자율방범 활동 시 신체적 위협 정도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 이다가 41.5%, 느낀다가 27.6%, 느끼지 않는다가 30.9%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원들

중 10명에 한 명은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동 중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참여자가 30% 정도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험이나 보상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찰과의 합동순찰과 철저한 교육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0> 자율방범 활동 시 신체적 위협 정도

	빈 도	%
매우 느낀다	5	5.3
비교적 느낀다	21	22.3
보통이다	39	41.5
비교적 느끼지 않는다	17	18.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2	12.8
합 계	94	100.0

(7)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 범죄정보 습득 정도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 범죄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73.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범죄정보 등 정보제공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답변에 비해 자율방범 대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자율방범대원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얻는 정보 외에도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도 해석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얻는 경험과 정보는 지역사회에 범죄예방에 환류(feed-back)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자율방범 활동을 통해 지역 범죄정보에 대한 습득 정도

	빈 도	%
아주 많이 알게 되었다	24	25.5
비교적 알게 되었다	45	47.9
보통이다	16	17.0
별로 알지 못했다	9	9.6
합 계	94	100.0

(8) 자율방범 활동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정도

자율방범 활동을 한 이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64.9%의 응답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4%에 불과하였다. 주민들의 방범 활동은 범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범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표 3-22> 자율방범 활동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정도

	빈 도	%
매우 감소하였다	14	14.9
비교적 감소하였다	47	50.0
보통이다	27	28.7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5	5.3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1	1.1
합 계	94	100.0

(9) 자율방범 활동 후 정신적 만족감

자율방범 활동을 한 이후 보람과 긍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1.5%의 응답자가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하였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봉사 활동에 상당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이다.

<표 3-23> 자율방범 활동 후 보람과 긍지를 느낀 정도

	빈 도	%
매우 느끼고 있다	45	47.9
비교적 느끼고 있다	41	43.6
보통이다	6	6.4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2	2.1
전혀 느끼지 않았다	-	-
합 계	94	100.0

그리고 자율방법 활동 후 가족과 이웃의 존경을 어느 정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9.5%의 응답자가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표 3-24> 자율방법 활동 후 가족과 이웃의 존경을 받은 정도

	빈 도	%
매우 많이 받게 되었다	13	13.8
비교적 받게 되었다	43	45.7
보통이다	30	31.9
별로 받지 못하였다	6	6.4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2.1
합 계	94	100.0

앞의 <표 3-8>에서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물질적 보상 보다는 명예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경험을 더욱 중시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면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물질적 보상 보다 정신적 만족감 즉, 보람과 긍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존경을 더욱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율방법 활동 참여 유도 방안으로 참고할 만한 결과라 하겠다.

(10) 자율방법대장의 역할 중요성과 요건

자율방법대장은 실질적으로 자율방법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이다. 자율방법대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96.8%가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표 3-25> 자율방법대장의 역할 중요 정도

	빈 도	%
매우 중요하다	72	76.6
비교적 중요하다	19	20.2
보통이다	2	2.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1
합 계	94	100.0

또한 자율방범대장이 지녀야 할 요건으로는 리더십이 39.4% 차지하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5.1% 차지하였다. 방법 전문지식은 16.1%를 차지하였다.

<표 3-26> 자율방범대장이 지녀야 할 요건

	빈 도	%
리더십	37	39.4
방법 전문지식	17	18.1
경제력	6	6.4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력	33	35.1
기 타	1	1.1
합 계	94	100.0

자율방범대장은 대원들의 화합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갖춘 인물이 적임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의 및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담당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자율방범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1)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신뢰감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뢰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3.2%를 차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였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4%를 차지하였다.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경찰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방범순찰 참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경찰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성식, 2001: 121).

따라서 경찰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친근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우호적 분위기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표 3-27>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신뢰감

	빈 도	%
매우 신뢰하고 있다	12	12.8
비교적 신뢰한다	38	40.4
보통이다	38	40.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5	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1.1
합 계	94	100

(12)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한 경찰의 인정 정도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52.1%의 응답자가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앞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찰은 67.9%가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29.8%가 인정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원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입장에서 아직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율방범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28>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한 경찰의 인정 정도

	빈 도	%
매우 인정하고 있다	14	14.9
비교적 인정하고 있다	35	37.2
보통이다	28	29.8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2	12.8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5.3
합 계	94	100

(13) 자율방범 활동의 참여 권유 정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율방범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85.1%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유도 전망을 밝게하는 현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자율방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과 함께 참고 할 결과로 보인다.

<표 3-29> 자율방범 활동의 참여 권유 정도

	빈 도	%
매우 그렇다	42	44.7
비교적 그렇다	38	40.4
보통이다	13	13.8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합 계	94	100

(14)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처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등 예산을 어느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대원이 35.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경찰 29.8%, 정부 23.4%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지역 주민의 기부금은 8.5%, 지역 기업의 협찬이 2.1%를 차지하였다.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자율방범대의 소요 예산 지원을 정부나 유관기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의 협찬이나 기부금, 혹은 바자회 등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30>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처

	빈 도	%
경 찰	28	29.8
자치단체	33	35.1
지역 주민의 기부금	8	8.5
정 부	22	23.4
지역 기업의 협찬	2	2.1
기 타	1	1.1
합 계	94	100

(15)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조달 방법

자율방범대에 부족한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앞의 예산 지원처와 마찬가지로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31> 자율방범대 부족 경비 조달 방법

	빈 도	%
특별히 운영경비가 필요없다	1/94	1.1
대원들의 회비로	90/94	95.7
대장의 기부금으로	4/94	4.3
지역 기업의 찬조금으로	6/94	6.4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8/94	8.5
기 타	3/94	3.2

※ 복수답변 가능

(16) 자율방범대 별도 사무실의 형태

자율방범대의 별도 사무실(모임 장소)이 어떤 형태인가에 대한 질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있다는 응답이 79.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방법초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9.1%이고, 별도 공간이 없다는 응답자도 1.1%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장비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사무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3-32> 자율방범대 별도사무실의 형태

	빈 도	%
별도 공간이 없다	1	1.1
컨테이너 박스로 있다	75	79.8
방법초소를 이용한다	18	19.1
합 계	94	100

6)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자율방범대원들이 제안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 중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장비(무전기, 통일된 유니폼, 차량, 가스총)보조가 전체 응답자 중 36.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 29.8%를 차지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10.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지구대(파출소)에 혹은 별도의 방법초소 지원,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 순찰 강화, 봉사정신에 입각한 자율 활동 유인방안 마련, 참가 대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으나마 대가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원의 대원증을 관내 경찰서장 명의로 발급해 줄 것 등을 제시하였다.

4.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1.0%이고, 여성이 29.0%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30.1%, 20대 21.6%, 50대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대재) 25.6%, 전문대졸 21.6%, 대학원졸(재학) 8.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38.1%로 가장 많고, 생산관리 13.6%, 공무원 12.5%, 전문직 9.1%, 기타 0.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분포는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3.2%로 가장 많으며,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2.2%,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3%, 100만원 미만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에 대한 분포는 아파트단지가 40.3%, 일반 주택가 33.5%, 농촌지역 8.5%, 상가 1.7%, 공장지대 0.6%, 기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범 주	빈 도	%
성 별	남성	125	71.0
	여성	51	29.0
연 령	20대	38	21.6
	30대	53	30.1
	40대	57	32.4
	50대	28	15.9
학 력	고졸	78	44.3
	전문대졸	38	21.6
	대졸(대재)	45	25.6
	대학원졸(재학)	15	8.5
직 업	전문직	16	9.1
	사무관리	31	17.6
	생산관리	24	13.6
	공무원	22	12.5
	자영업	67	38.1
	기타	16	9.1
소 득	100만원 미만	8	4.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4	7.9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6	43.2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9	22.2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	15.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	6.3
주거형태	일반주택가	59	33.5
	아파트단지	71	40.3
	상가	3	1.7
	공장지대	1	0.6
	농촌지역	15	8.5
	기타	27	15.3
합 계		176	100

2) 거주 지역의 치안상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1.2%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많이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표 3-34> 3년간 거주지역의 범죄발생 정도

	빈 도	%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8	4.5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다	27	15.3
보통이다	51	29
비교적 발생하지 않았다	73	41.5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17	9.7
합 계	176	100

3) 지역사회 의 결속력

거주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 47.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1.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이나 활동이 많은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3.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33.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54.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14.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성식은 지역주민들의 방범순찰활동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에의 집합협력의 정도는 그 지역의 성원들이 얼마나 결속되어 있고 상호유대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성식, 2001: 120). 이 연구결과로 볼 때 지역성원들 간의 결속력과 이웃 간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5> 지역의 특성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거주 지역의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18(10.2)	65(36.9)	56(31.8)	27(15.3)	10(5.7)	176(100)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이나 활동이 많은 편이다	11(6.3)	47(26.7)	59(33.5)	35(19.9)	24(13.6)	176(100)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4(2.2)	22(12.5)	54(30.7)	36(20.5)	60(34.1)	176(100)

※ ()안은 %임.

4)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관한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극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4.5%를 차지하였고, 9.7%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방법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를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다가 23.3%를 차지하였다. 위험부담이 있어서는 38.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5.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귀찮아서 57.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1.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는 40.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1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표 3-36>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시간이 없어서	18(10.2)	78(44.3)	63(35.8)	14(8.0)	3(1.7)	176(100)
방법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6(3.4)	38(21.6)	91(51.7)	34(19.3)	7(4.0)	176(100)
위험부담이 있어서	13(7.4)	54(30.7)	82(46.6)	24(13.6)	3(1.7)	176(100)
귀찮아서	41(23.3)	60(34)	55(31.3)	13(7.4)	7(4.0)	176(100)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19(10.8)	53(30.1)	79(44.9)	19(10.8)	6(3.4)	176(100)

※ ()안은 %임.

응답자들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와 귀찮아서 소극적인 주민들의 경우는 자율방법 활동 시

간대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자율방범 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답자 중에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38.1%의 주민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민 자율방범 활동시 경찰과 합동 순찰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며, 아울러 활동시 부상 등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겠다.

5)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일반주민의 인식 정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나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6.6%로 나타났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9%를 차지하였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아직 지역사회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는 자율방범 활동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39.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9.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즉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는 대체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나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는 질문에는 40.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14.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일반주민들은 아직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련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대 시민 홍보가 절실이 필요하다.

나는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주위에 권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27.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20.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에 비하여 비참여 주민의 경우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38.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8.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에서도 참여주민보다 비참여 주민들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또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도 43.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일반주민들은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경찰과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자율방법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항목에서는 4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앞의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련하여 비참여 일반주민들의 소극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57.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8.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주민들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는 생각하나, 자기 자신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주민들은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식이 낮은 편이고, 경찰과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7>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방법 활동에 관한 인식 정도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자율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12 (6.8)	23 (13.1)	59 (33.5)	57 (32.4)	25 (14.2)	176 (100)
자율방법 활동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15 (8.5)	55 (31.3)	71 (40.9)	29 (16.5)	5 (2.8)	176 (100)
자율방법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편이다	4 (2.3)	21 (11.9)	80 (45.5)	53 (30.1)	18 (10.2)	176 (100)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고, 주위에 권하고 싶다	5 (2.8)	31 (17.6)	92 (52.3)	37 (21.0)	11 (6.3)	176 (100)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	5 (2.8)	28 (15.9)	76 (43.2)	50 (28.4)	17 (9.7)	176 (100)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	5 (2.8)	24 (13.6)	71 (40.4)	60 (34.1)	16 (9.1)	176 (100)
기회가 된다면 자율방법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8 (4.5)	18 (10.2)	75 (42.7)	41 (23.3)	34 (19.3)	176 (100)
거주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7 (15.3)	75 (42.6)	60 (34.1)	11 (6.3)	3 (1.7)	176 (100)

6) 경찰의 자율방범대 역할에 대한 인정 정도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34.6%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16.5%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일반 주민들은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역할을 경찰이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3-38>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 인정 정도

	빈도	%
매우 인정하고 있다	8	4.5
비교적 인정하고 있다	53	30.1
보통이다	86	48.8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22	12.5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7	4.0
합계	176	100

7)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주체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등 예산을 어느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 중 정부가 38.1%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29.0%, 경찰 14.8%, 지역 주민의 기부금 13.1% 지역 기업의 협찬 4.0%, 기타 1.1%로 나타났다. 일반주민들은 자율방범대의 운영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3-39>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 예산 지원 주체

	빈도	%
경찰	26	14.8
자치단체	51	29.0
지역 주민의 기부금	23	13.1
정부	67	38.1
지역 기업의 협찬	7	4.0
기타	2	1.1
합계	176	100

8)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의 주체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자치단체 30.1%, 경찰 23.3%, 정부 14.8%,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의 주체

	빈 도	%
경 찰	41	23.3
자치단체	53	30.1
정 부	26	14.8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54	30.7
기 타	2	1.1
합 계	176	100

9)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일반주민들이 제안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로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보다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 하에 경찰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대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지로 일반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원의 모집에 있어서는 은퇴한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근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복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교육의 필요성과 재정적 지원문제도 다수의 응답자가 제안하고 있다.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설문조사를 통한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치안상태에 대해서 경찰은 대체로 안전하다(64.2%)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자율방범대원은 22.3%, 일반 시민은 24.5% 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시민들은 경찰에 비해 우리나라 치안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의 협력단체의 필요성(65.6%)과 그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의 필요성(67.9%)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29.8%)는 답변보다 인정하지 않는다(30.6%)는 답변이 조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범죄정보의 제공과 방법 교육 지원에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도 압도적(71.7%)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경찰 자체의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지적인 응답자도 65.7%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상 연계성은 경찰과 밀접하지만,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함으로써 이원화된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 중 거주 지역의 안전(94.7%)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84.1%), 경찰의 방법활동을 돕기 위해(76.6%),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73.4%), 경찰과 혹은 관계기관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2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역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방범 활동 비참여 주민들과 구별되는 점으로 참여 주민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명예(67%)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경험(80.8%)을 중요한 동기로 들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60.6%)와 귀찮아서(37.2%)

가 가장 많았다.

자율방범대를 알게 된 계기는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71.3%)가 가장 많았으며,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수는 주 1회(63.8%)와 주 2회(27.7%)가 가장 많다.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활동 시간대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이전(72.3%)이 압도적이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97.8%가 인정하였다.

경찰과의 합동 순찰은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법 활동 시 신체적 위험을 느끼는 대원들이 2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방범 활동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상당히 감소(64.9%)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 활동 후 보람과 긍지를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81.5%),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존경(59.5%)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장의 역할은 중요하며, 대장이 지녀야 할 요건으로는 리더쉽(39.4%)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력(35.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시민들은 지역사회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 비교적 참여도가 낮은 것(54.6%)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귀찮아서(57.3%)가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54.5%), 위험부담이 있어서(38.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들의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자율방범 활동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과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아 나타났다. 주민 참여의 실천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33.5%)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처는 정부(38.1%), 자치단체(29%), 경찰(14.8%), 지역 주민의 기부금(13.1) 순으로 나타났다.

제4절 자율방범대 현행 지원 실태 분석

경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이 안정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1998년부터 민방위 해당자의 기본교육을 면제하고 있다.⁶⁾ 경찰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원이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고보상 대책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10만982명 중 7만9,359명이 가입하여 78.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모범대원 및 형사범 합동검거 유공자 5천225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 3-41>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이다.

<표 3-41>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지방청	구분	지원받는 조직수		지원액		조직별 평균 지원액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년도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총계		3,836	3,844	1,092,038	11,423,480	285	2,972
서울		488	492	116,903	1,158,118	240	2,354
부산		166	219	13,074	101,985	79	465
대구		162	163	35,400	332,320	219	2,039
인천		117	112	15,366	159,222	131	1,421
울산		72	69	17,191	125,502	239	1,819
경기		603	594	243,598	2,995,000	404	5,042
강원		237	234	147,593	1,223,898	623	5,230
충북		171	169	185,959	1,282,115	1,087	7,586
충남		545	500	84,733	551,572	155	1,103
전북		265	270	39,150	939,855	148	3,481
전남		337	340	46,825	966,231	139	2,842
경북		348	349	75,894	803,649	218	2,303
경남		318	311	66,824	687,011	210	2,209
제주		7	22	3,525	97,000	504	4,409

※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국 제공.

6) 1998년 경찰청의 요청으로 민방위 해당자 교육훈련을 면제하고 있다. 해당자는 지구대장의 근무확인서를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면 면제 조치 받을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3천836개 조직이 연간 평균 약 2십8만5천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71개 조직에 평균 1백8만7천원을 지원받아 가장 지원액이 많았으며, 부산은 166개 조직이 평균 약 7만9천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직별 지원액이 전국 평균 2백97만2천으로 10.4배가 증액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년도와 같이 충북이 7백58만6천원을 가장 지원액이 많았으며, 부산이 46만5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청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각 지방청 내에서도 조직별로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증액되었으나, 작게는 연간 46만5천원, 지방청별 연간 평균 3백만원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은 대원들의 회비 혹은 모금형식으로 충당한다. 순찰용 차량도 대원소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도 대원 개인이 각자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야식비 정도의 규모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2006년 7월 31일자의 규정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세출예산의 목(세세항)중에서 이전경비에 속하며 이전경비 중에서는 일반보상금 비목에 속한다.⁸⁾ 일반보상금 비목에는 12개 세목이 있으며, 자율방범대원운영비와 함께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 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대해서 위의 규정은 ①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②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06 방법활동계획을 적용, ③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영비, ④ 방법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 단가의 1/2이내 적용), ⑤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등으

7) 본 연구자가 2006년 12월 전화인터뷰에 의하면, 서울 강남의 S 구청의 경우 2006년도 1년간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조직별로 반기당 75만원, 연간 15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인근의 타 구청의 경우도 반기별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이전경비 중에 민간이전 비목이 포함되며, 민간이전 비목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세목이 포함되어 있다.

로 지출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설정 내용상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소모성 경비와 야식비에 한정하고 있으며, 출동비의 예산배정 근거는 있으나 차량순찰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수리비 및 순찰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교육·훈련비나 무전기 등 방법용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방법활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

자율방범대와는 달리 유사한 민간 자원봉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 별(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⁹⁾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며, 그 설치·명칭·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는 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와 동일한 세출 항목에 있는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지방자치단체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지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72. 12.20, 조례 제742호 제정)에 의하면¹⁰⁾, 의용소방대는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춘 자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①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②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③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④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다.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

9) 소방기본법 제36-39조 참조.

10)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7조의2 참조.

장이 임용한다. 대원은 업무수행시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신분증은 시장이 발급하고 대원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다.

의용소방대의 지원 경비는 조례 제19조에 ‘대원에 대한 수당·부상 및 사망보조금·의소대 및 지역대의 장비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 또는 지역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재학 중인 1인에 한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율방범대원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관련 근거 법규 및 지원 예산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자율방범대는 소규모 운영경비만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있을 뿐이고, 사업비와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각종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하고 청소년 선도 및 노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활동을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업무수행 중 다른 자원봉사단체 종사자보다 직접적으로 범죄자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¹¹⁾이나 『자원봉사

1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활동기본법¹²⁾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한 사고보상대책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단체상해보험이 2006년 6월 30일 현재 78.6%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범죄예방과 청소년보호 및 노약자보호의 사회적 공익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을 한 단체는 자율성이 보장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 지원(사업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제감면과 우편요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11조).

- 1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을 이유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2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을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④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의한 포상과 법 제14조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교육, 보험의 가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의 종류는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와 경제적 손실보호,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및 공제 요건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과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16조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17조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18조).

제4장 일본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방법 자원단체의 활동실태 분석

일본은 2004년(평성16년) 10월에 재단법인 『사회안전연구재단』에서 실시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이 범죄억제에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9.3%였다. 또 이미 참가했던 자를 포함해서 49.5%의 응답자가 자주방법활동에의 참가 의사를 보인 바 있다(警察廳, 2006).

이처럼 일본은 지역 치안수준의 악화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에 의해서 많은 방법자원단체가 결성되었다. 2004년(평성16년) 12월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방법 자원단체 수는 전국에서 약 8,000단체(전년에 비해 약 5,000단체 증가)이고,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총수는 약 52만 명(전년에 비해 약 34만4천명 증가)을 넘었다(警察廳, 2006).

2006년 6월 30일 현재는 전국에 약 2만6천여 단체에 달하여, 전년도 말에 비해서 약 1.3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경찰청의 집계이다. 도도부현(都道府縣)경찰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의 체감치안의 악화 영향으로 방법자원단체 수는 증가하고 있고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도 약 164만8천명에 달한다(警備保障新聞, 2006年(平成18年) 11月 5日(日曜日)字).

경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주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자원단체는 전국에 2만6,051단체이다. 그것을 구성원별로 보면, 정내회(町内會)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서 1만3,708단체로 전체의 52.6%를 점한다. 다음으로 그 외 주민에 의한 단체가 4천564단체(17.5%), 자녀를 둔 보호자에 의한 단체가 3천924단체(15.1%)이다. 특히 자녀들이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자, 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2005년 말에 비해 약 1.4배로 증가하였다(警備保障新聞, 2006年(平成18年) 11月 5日(日曜日)字).

2006년 6월 30일 현재 방법자원단체의 수를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보면 가장 많

은 곳이 사이타마현(埼玉縣)의 2천954단체, 도쿄도(東京都)가 2천 929단체, 효우코현(兵庫縣)이 1천632단체, 카나가와현(神奈川)이 1천457단체, 오사카(大阪) 1천315단체, 지바현(千葉) 1천77단체로 4자리 수는 이들 6개 도도부현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3도도부현 뿐이었다(警備保障新聞, 2006年(平成18年) 11月 5日(日曜日)字).

방범자원단체의 월평균 활동일수는 20~29일이 6천249단체(24.0%), 3~4일이 5천279단체(20.3%)이고, 매일 활동하고 있는 곳도 2천607단체(10.0%)로 활동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도보에 의한 방법순찰활동을 하는 단체가 2만1,152단체(81.2%), 통학로에서 자녀들에 대한 보호·유도활동을 하는 단체가 1만8,811단체(72.2%) 등이다.

전체 2만6,051단체 중 2만186단체가 해당지역에 활동거점을 설치하고 있다. 내역은 정내회(町内會)·자치회(自治會)의 집회소가 8천751단체(43.4%), 공민관(公民館)이 2천944단체(14.6%), 교번(交番)·주재소를 활동거점으로 하는 단체가 1천193단체(5.9%) 등이다.

경찰과 자치체 등과의 제휴상황은 경찰과의 합동활동을 실시하는 곳이 1만842단체(41.6%), 방법협회와의 협동보조가 5천879단체(22.6%), 지자체와의 제휴가 2천537단체(9.7%)이다. 교육·훈련 등 연수는 경찰로부터 받는 연수가 9천64단체(34.8%), 방법협회로부터 받는 연수가 4천13단체(15.4%), 지자체로부터 받는 연수가 3천34단체(11.6%)가 되고 있다(警備保障新聞, 2006年(平成18年) 11月 5日(日曜日)字).

<사례> 山口縣岩國市麻里布町에서는 소년에 의한 범죄와 불량행위,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나 縣 내에서의 조폭범죄 등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성16년 2월 상점주, 소방단원 등에 의해서 방법순찰대를 조직 「麻里布패트롤」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岩國경찰서와 제휴해서 가두에서 순찰활동을 주 2회 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건, 사고, 재해의 미연 방지를 도모하였다. 이 조직이 활동한 같은 경찰서 마리포교번 관내의 평성16년 상반기 형법범 인지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3건(24.1%)이 감소하였다.

제2절 자율방범활동 사례 분석¹³⁾

1. 토요오카·츠지마지구 거리범죄억제 시마야마회

- 지역주민(지구자치회회원)이 일환이 된 방범활동 -

1) 구성원

지역주민(지구자치회회원) 약 2,500세대

2) 결성의 경위

오이타·벳푸시의 베드타운인 하야미군 히노데쫄의 토요오카·츠지마지구에서 침입절도의 증가와 소년에 의한 공갈협박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역자치회장과 주재소는 『자주방범조직』의 결성에 관해 협의하고 ‘지역의 안전은 지역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3년 6월 지역주민에 의한 자주방범조직『토요오카·츠지마지구 거리범죄억제 시마야마회』를 결성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까지 방범자치회장을 책임자로 한 8개의 방범대에 의한 방범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활동의 목적

침입절도 및 거리범죄의 억제, 비행소년의 우범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일 주간은 고령자 및 주부, 야간은 세대주 남성, 심야는 자치회임원을 중심으로 각각 2~6명씩 토요오카·츠지마지구내의 도로, 공원, 공터 등에서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13) 일본 자율방범활동 사례는 일본 전국방범협회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자료임(<http://www.bohan.or.jp>).

방법순찰에서는 차량털이 다발지구에서의 자동차 잠금 상태 확인, 통학로에서의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범죄의 발생상황 등에 맞춰 중점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활동용 점퍼, 모자, 완장, 회중전등, 방법일지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구성원이 많아짐으로써 순찰계획은 전월까지 구성원을 참가희망 시간대마다 모집하여 작성하고 있다. 활동내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로 의견을 구하여 필요한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방법순찰에 의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료 시에는 활동 중에 느낀 내용 등을 방법일지에 적어 활동에 종사하는 구성원 전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법순찰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방법순찰의 요령 등에 대한 차트를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7) 관계기관 · 단체와의 연계방법

히노데경찰서와 주재소로부터 범죄정보의 제공, 방법순찰 실시요령, 착안점 등의 교시를 받고 있는 외에 주재소경찰관과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재단법인 오이타현 방법협회 및 하야미군 방법협회로부터 자주방법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활동용 점퍼, 모자, 회중전등을 지급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방법순찰이 일상생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법순찰의 참가는 개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활동자금은 자치회의 보조와 바자회 등을 통해 염출하여 참가의식을 높이고 있다.

9) 참 고

방범순찰개시 전과 비교하여 침입절도를 비롯해 범죄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외에 소년들에게 말 걸기를 통해 소년들의 우범지역이 소멸되었다.

2. 세이프티 · 팀 · 오가키 (약칭 : STO)

- JR오가키역전 지구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주민순찰대 -

1) 구성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27명

2) 결성의 경위

JR오가키역 주변의 빈번한 범죄발생억제를 위해 2001년 7월 오가키경찰서와 오가키시 청년모임협의회가 사회봉사활동단체에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호소하고 뜻있는 사람들을 모집한 결과 17명의 지원자가 모여 2001년 12월 『세이프티 · 팀 · 오가키』를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사회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빈번한 각종 사안의 방지활동을 추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월 2회 정도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00분까지 약 20명으로 방범순찰활동, 거리의 청소년에게 말 걸기 활동 외에 낙서제거 등의 환경정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활동용 점퍼, 신호등 등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결성초기 단체의 순찰활동 등이 시민에 알려지지 않아 신분을 설명해야 했으나 통일점퍼를 착용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활동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외에 신문, TV 등의 보도와 행정홍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단체의 활동은 시민에게 알려졌다.

7) 관계기관 · 단체와의 연계방법

오가키경찰서와 오가키역전 파출소로부터 범죄정보의 제공과 방법순찰 활동요령, 주의점 등의 교시를 받고 있는 외에 합동순찰의 실시, 활동 기록지를 오가키역전 파출소에 구비하여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다이야스지구 방범협회로부터 자원봉사 보험가입과 활동용 점퍼의 제작경비지원과 지역안전뉴스 등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기후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안심거리 만들기 자원봉사』등록제도에 등록하여 각종정보제공을 받고 있는 외에 기초자치단체, 자치회 등에서 실시하는 방법활동에 참가하는 등의 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을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9) 참 고

오가키역전 파출소관내의 2003년 형법범(형사사건) 인지건수가 감소하였다(감소 수는 파출소·주재소별로 현 내 제1위). 단체의 활동으로 기후현 내에서 지역안전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3. 시즈오카현 지역안전 추진원

- 지역과 밀착한 폭 넓은 활동 -

1) 구성원

방법지도원 3,666명

2) 결성의 경위

시즈오카현 경찰에서는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범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지역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6년 11월 「지역안전 활동추진요령」을 정하였다. 경찰에서는 지역주민들 가운데 지역안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욕이 있으며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주민을 「지역안전 추진원」으로써 경찰서장과 지구방법협회장이 위촉하여 경찰, 방법협회, 자치단체와 연계된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안전 추진원 제도」를 발족시켰다. 지역안전 추진원은 경찰서의 관내마다 협의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999년 9월에는 지역안전 추진원으로 위촉된 여성이 여성의 특성을 살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후지엘레강스」 등의 여성부를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지구방법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방법조직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과 밀착한 자주방법활동을 파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월 1회 이상, 각 경찰서마다 방법순찰, 안전지도·방법진단, 초등학교 등 방문활동, 위험개소의 점검활동,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외에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의견·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지역안전 맵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공민관 등에 배포, 게시하고 있

다. 또한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양로원, 공민관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의 약취유괴방지 및 악질상법 피해방지의 종이인형극, 콩트를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점퍼, 모자, 뱃지, 방법광고지, 종이인형극 등 제작용 문방구 등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각 경찰서마다 활동하고 있어 각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1회 「지역안전 활동의 사례집」을 발행하여 각 추진원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1회 「지역안전추진협의회」와 「연수회」를 개최하여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의문점 등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7) 관계기관 · 단체와의 연계방법

각 경찰서로부터 범죄정보와 회의장소 등을 제공받고 있는 외에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각 지구방법협회로부터 활동용 점퍼, 모자, 뱃지 등의 물품을 지급받고 있는 외에 일부자치단체로부터는 종이인형극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각 추진원의 자주성을 배려하여 추진원 스스로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활동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추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기와 활동내용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참 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종이인형극 · 방법교실과 양로원에서의 방법강습회 등 지

역실정과 대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며 지역주민에게도 자주방범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4. 스사미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 일상생활을 통해 어린이를 지키자! -

1) 구성원

스사미쵸 교육위원회, 소년보도원, 초등학교PTA 약 60명

2) 결성의 경위

스사미쵸에서 어린이에게 말 걸기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2003년 10월 스사미쵸 교육위원회, 소년보도원들이 등하교시의 거리방범지도를 실시하는 「스사미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 후 스사미 초등학교의 보호자 등이 「어린이를 지역전체가 범죄로부터 지키자」며 시작된 것이 「5분 전 마중운동」과 「상록수순찰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활동의 목적

어린이를 지역전체가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등하교시간대에 스사미 초등학교 학구내의 통학로에서 PTA 등 약 40명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에게 인사하는 등의 말 걸기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보호자가 하교 시에 집에서 마중 나가는 「5분 전 마중운동」과, 자전거바구니에 ‘상록수순찰’이라고 적힌 카드를 부착하고 학구 내를 순회하며 어린이에게 인사하는 등의 말 걸기를 실시하는 「상록수순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상록수순찰』이라고 적힌 카드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결성초기는 구성원도 40명으로 적어 실시자의 부담이 컸으나 자치회, 부녀회, 학교 등에 대한 동참호소와 보도, 홍보에 의한 단체의 활동소개를 통해 참가자가 늘고 있다.

7) 관계기관 · 단체와의 연계방법

쿠시모토경찰서로부터, 범죄발생정보의 제공과 어린이의 안전대책에 대한 교시 등을 지원받고 있다. 스사미 초등학교로부터 자전거에 부착하는 ‘상록수순찰’이라고 적힌 카드 60매를 제공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 쇼핑 등의 일상생활의 시간을 활용해 실시하는 등 실시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9) 참 고

결성 후의 활동으로 인해 동지역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말 걸기 사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5. 사카다 육성챌린지팀(약칭 : SICT(식트))

- 대학 동아리활동으로 자율방범 -

1) 구성원

대학생 25명

2) 결성의 경위

사카다시내의 범죄와 소년비행의 증가를 막고자 사카다경찰서가 청년층의 자주방범활동요청을 받아들여 2002년 11월 토호쿠공익문화대학의 공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공헌 등을 목적으로 한 '사카다 육성챌린지팀'을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지역주민, 관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정화활동과 규범의식의 계발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실시하여 소년의 비행방지와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활동의 내용

학업에 지장이 없는 날짜, 시간대를 선정하여 음식점가 등 성인광고지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지에서 약 10명의 구성원이 광고지의 제거 등의 활동, 소년들이 모이는 역, 공원, 대형점포, 편의점 등에서 소년에게 말 걸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타 자율방범단체와의 협동홍보활동, 소년건전육성관계기관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활동용 점퍼(단체명 기입)

6) 활동상의 문제점·해소방법

학생신분이며 활동인원이 한정적인 관계로 타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참가하는 등, 타

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7)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방법

사카다경찰서로부터 월1회의 연수회를 통해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외에 세밀경계 등에 있어서는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주최하는 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연수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대학생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부터 자원봉사활동에 참가’라는 방침으로 장래의 자원봉사리더의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 참 고

단체의 활동을 통해 타 자율방범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외에 초등학생에 의한 순찰대와 농작물절도방지순찰대가 결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자주방범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6. 이시게쵸 안전안심자원봉사순찰

- 일반모집의 자원봉사에 의한 순찰 -

1) 구성원

일반지역주민, 소방단원, 자치단체직원 등 500명

2) 결성의 경위

이시게쵸 내 치안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12월 ‘이시게쵸 생활안전조례’를 제정

하고 이시계조 안전안심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한 결과 순찰대가 결성되어, 2003년 6월 모집한 일반지역주민, 소방단원, 자치단체직원 등 약 500명으로 구성된 『이시계조 안전안심자원봉사순찰』을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범죄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방법활동을 전개하여 자주방법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방법의식 고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 3시간 정도,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2대의 순찰차를 사용하여 순찰활동을 한다. 주간은 방법홍보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야간은 사건사고의 다발지역과 범죄자 등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원 외에 번화가, 학교, 공공시설 등의 방법순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찰차의 운행은 방법순찰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순찰범위를 정하고 학교 시설 등의 순회 시는 5분 정도의 체류경계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순찰차(2대), 모자, 활동용 점퍼, 완장, 신분증명서, 대형라이트 등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구성원이 많은 관계로 방법순찰종료 시에는 순찰일지에 순찰장소, 취급사항, 경계를 요하는 장소 등의 인계를 실시하고 있다. 순찰차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순찰차운행상의 유의사항을 정해 구성원의 사고방지의식을 고양시켜 교통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7)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방법

시모쓰마경찰서로부터 범죄정보의 제공과 연수회의 개최에 의한 방법순찰의 실시요령, 착안점 등의 교시를 받고 있는 외에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시게쵸에서 구입한 순찰차2대, 휴대전화, 대형라이트를 빌리고 차량의 연료, 모자, 활동용 점퍼, 완장의 지급 외에 방법순찰 실시계획의 책정 등을 지원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이시게쵸 안전 안심거리 만들기 협의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방법순찰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활동거점의 정비와 활동요령 등을 나타내는 등 구성원의 부담이 줄도록 노력하고 있다.

9) 참 고

이시게쵸의 2003년도 형법범(형사사건) 인지건수가 시모쓰마경찰서 관내의 타 지역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7. 키누타쵸회 명명 순찰대

- 애견가에 의한 순찰활동 -

1) 구성원

애견가 184 명

2) 결성의 경위

세타가야구 키누타쵸회 내 중학생에 의한 괴테러사건 등의 흉악범죄와 빈집털이, 날치

기, 차량털이 등의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2003년 7월 경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방법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애견가들이 키누타쫓회 방법부의 하부조직으로써 『키누타쫓회 명명순찰대』를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방법활동을 실시하여 키누타지구의 방법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학원수업 후 귀가시간대 등의 일상적인 애견산책 시 범죄를 억제하고 근린주민의 방법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명명순찰’완장을 착용하고 산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상한 자, 수상한 차량, 위험한 위법주차 등을 발견한 경우 110(한국의 112신고)번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이조경찰서로부터의 범죄정보 등을 바탕으로 ‘키누타쫓회 명명순찰대통신’ 등을 작성하고 엽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명명순찰대』완장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많은 애견가가 순찰에 참가함으로써 한 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원을 모집하는 외에 대원의 방법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지역 내 범죄발생상황 등의 각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7)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방법

세이조경찰서로부터 매주 범죄정보의 제공, 순찰상 유의점의 교시를 받고 있는 외에 '명명순찰대'완장을 지급받고 있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세타가야구청, 키누타쵸회로부터 활동비 등의 원조를 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명명순찰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원에 관한 정보는 바로바로 제공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활동으로 입회금, 회비가 없어 개인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9) 참 고

어린이의 옥외활동을 보호하는 지역의 눈으로씨의 의식이 높아져 산책 중에 미아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키누타쵸의 2003년도의 범죄발생건수가 침입절도사건을 비롯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용홈페이지 http://www02.so-net.ne.jp/~jj1vkl/kinuta_wanpat

8. 마리후순찰

- 소년범죄에 대한 지역의 유지에 의한 활동 -

1) 구성원

상점주, 소방단원, PTA, 일반지역주민 등 30명

2) 결성의 경위

지역 내 소년범죄, 편의점 등지에서의 불량행위 외에 방화로 보이는 화재, 싸움 등 흥

악범죄의 다발에 대응하여 상점가가 중심이 되어 뜻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2004년 2월 상점주, 소방단원 등에 의한 방법순찰조직 '마리후순찰'을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거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사건, 사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주 토·일요일에 저녁 1시간 정도 상점가 아케이드와 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원이 교대로 5~6명이 방법순찰을 실시하여 편의점 등에서 소년들의 불량행위를 발견한 경우는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활동용 청색점퍼, 완장, 모자

6) 활동상의 문제점 · 해소방법

대부분의 구성원이 상점관계자여서 저녁시간대는 바쁜 관계로 순찰 참가자가 고정되어 가는 문제가 있어 상점가의 홈페이지에 방법순찰의 일정을 게재하여 참가자의 희망조사 및 순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7) 관계기관 · 단체와의 연계방법

이와쿠니경찰서로부터 활동용 점퍼를 제공받는 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원간 정보교환회의에 경찰관이 참가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1개월에 1회 이상 회원 간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상황에 대한 반성검토를 실시하고 활동방법, 내용 등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고 있다.

9) 참 고

인접지역에도 자원봉사단체가 결성되는 등 동 단체의 활동으로 지역의 방법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상점가홈페이지 <http://www.webmarifu.com/patrol>

9. 초자쵸 · 후쿠도미쵸 등 지역환경정화순찰대

- 지역기업의 힘을 집결 F·B·I(아버지방법 인스트럭터) -

1) 구성원

지역기업임원, 종업원 등 30명

2) 결성의 경위

요코하마시내 유수의 번화가인 초자쵸 · 후쿠도미쵸지구에서의 노상주차와 성인광고지의 배포, 술집 등 유흥상점의 호객 등 치안의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이 이세사키경찰서를 비롯한 관계행정기관 · 단체에 요청하여 치안회복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자쵸 · 후쿠도미쵸 등 지역 환경정화 특별대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동위원회에서는 그 부속기관으로써 방법순찰을 실시하는 ‘초자쵸 · 후쿠도미쵸 등 지역 환경정화 순찰대’를 결성하였다.

3) 활동의 목적

방법순찰 등 적극적인 안전·안심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범죄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매월 제2·제4금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혹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후쿠도미쫄지구, 초자쫄지구, 이세사키쫄 내를 약 20명의 구성원으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가디언·엔젤스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토·일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초자쫄·후쿠도미쫄 등 지역 환경정화 특별대책추진위원회」가 2003년 11월에 범죄 없는 밝은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세이프티·스테이션」(통칭「반야」)에 1~2명이 상주하여 지리안내, 방법상담, 경찰과의 연락 외에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활동용 점퍼, 베레모, 야광조끼, 적색 정지봉 등

6) 활동상의 문제점·해소방법

세이프티스테이션 설치초기에는 주3일(월·수·금요일) 실시하였으나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상주체제를 강화하여 오후 6시 이후는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일본가디언·엔젤스 요코하마지부원이 제공하는 거점을 활용하여 무인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7)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방법

이세사키경찰서로부터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중구청으로부터 야광조끼를 지급받고 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일본가디언·엔젤스와의 합동순찰과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세이프티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활동거점을 정비하는 외에 신규회원·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스스로 가능한 활동(지역 내 미화활동, 주차금지운동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9) 참 고

녹색의 활동용 점퍼, 베레모와 일본가디언·엔젤스 요코하마지부원의 붉은 베레모가 이목을 끌고 방법순찰을 인지시켜 악질적인 호객행위 등이 감소하였으며 범죄발생건수도 감소경향에 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10. 안전 안심거리 만들기 모니터

- 자원봉사와 모니터의 기능을 갖춘 단체 -

1) 구성원

일반지역주민 183명

2) 결성의 경위

카스가이시내 재해발생과 소년에 의한 흉악범죄, 빈집털이피해, 날치기의 증가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목표로 1993년 6월 카스가이시가 중심이 되어 시내 각종 단체의 참가를 얻어 『카스가이시 안전한 거리 만들기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동협의회는 1995년도부터 방재·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의식고양과 지역안전리더의 육성을 목적으로 『카스가이 안전아카데미』를 개강하여 1999년 3월에 동강좌 방재코스를 졸업한 35명을 모니터¹⁴⁾로 위촉한 이후 모니터에 의한 아동의 안전 확

보, 방법진단 및 위험개소의 파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활동의 목적

지역의 안전에 대해 리더로써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행정기관 등에 대해 지역의 안전·안심에 필요한 제언을 함으로써 범죄와 재해에 강한 도시기반정비와 마음의 교류를 통한 안전네트워크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활동의 내용

대략 월1회, 카스가이시내의 초등학교구를 중심으로 4명 이상이 1조가 되어 통학로 순찰 등 '아동지킴이'에 의한 아동의 안전 확보활동과 방법체크시트에 의한 주거지의 방범진단활동, 위험개소의 파악 등 '안(전)·안(심)진단'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활동에 필요한 물품

유니폼(점퍼, 폴로셔츠), 모자, 어깨띠, 헬멧

6) 활동상의 문제점·해소방법

보니터에 고령자가 많아 카스가이시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원연수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수강을 요청하여 폭 넓은 연령층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카스가이시 홈페이지, 홍보지에 게재하는 외에 각종회합 등에서 아카데미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7)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방법

생활안전관계의 강좌를 개최할 때는 카스가이경찰서로부터 경찰관이 파견되는 외에 보

- 14) 보니터란? 『블런티어(자원봉사)』와 『모니터』를 합성한 조어. 지역의 안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며 또한 행정기관 등에 대해 지역의 안전·안심에 필요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의미로 지역의 안전에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을 보니터로 부르고 있다.

니터와 경찰관의 합동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카스가이시로 부터 유니폼, 모자, 어깨띠, 헬멧 등의 장비를 대여 받는 외에 보니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8) 활동상의 배려사항

보니터에 대해서는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지역 안전 활동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

9) 참 고

보니터의 자주적인 안전에 관한 계발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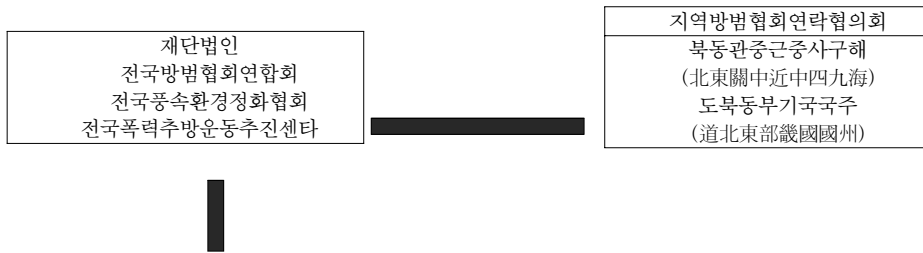
제3절 전국방범협회연합회의 조직과 활동¹⁵⁾

1. 조 직

전국방범협회연합회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전국방범협회연합회조직도

평성16년 11월 현재



15) 일본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제공 자료.

정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협력회원
도도부현방법협회 (도도부현풍속환경정화협회)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기업단체	기업단체 개인	기업단체
47단체(도도부현)	47단체(도도부현)	7단체	42사, 단체	138사



근린커뮤니티를 단위로 하는 방법단체 112,026단체	지구방법협회 1,259단체	시구정촌방법협회
기업이나 지역상점가, 지역단체회의 방법단체	일반경찰서의 구역마다	



방법연락소 방법추진원 방법지도원

재단법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안전하며 밝고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전방련」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연합회는 1962년 3월 설립 당시는 임의단체로써 시작하였다. 재단법인이 된 것은 1963년 5월이다.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도쿄를 비롯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의 방법협회와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 방법협회를 구성하는 조직은 지구방법협회, 기초자치단체 방법협회, 직장역 방법단체 등이 있다.

2. 활동 내용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일반방법 보급 활동과 전국의 방법협회 및 자율방법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받은 특정 공익증진법인(재

단법인 「전국방범협회연합회」)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 약물의 남용방지, 폭력단 배제활동의 각 활동을 3개의 주요 축으로 하고 있다.

제4절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일본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이 조직화된 계기는 대부분 지역 범죄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지역방범협회와 전국지역방범협회연합회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가 안전사회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방범조직의 활동은 대부분 순찰활동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정화활동과 불법주차금지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순찰활동은 주간에 고령자와 주부들이 참여하고, 야간에는 세대주 남성들이 교대로 순찰활동을 하며, 심야시간대는 방범자치회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순찰시간대는 가능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산책이나 쇼핑시간대에 순찰을 겸하여 참가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방범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부를 결성하여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범죄피해방지에 관한 종이인형극이나 콩트, 방범강습회 등을 열고 있다. 지역방범협회는 자율방범활동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의 방범, 방재 의식고양과 지역안전 리더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카스가이 안전아카데미」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시민학교」를 통해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조직의 운영은 지역방범협회로부터 각종 장비를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비나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자회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있다. 연합회나 지역협회 및 단위 방범조직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지역 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기부금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질서유지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겠다.

관할 경찰은 상세한 지역 범죄정보를 자율방범조직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의 매체는 경찰 홈페이지, 광고지, 신문에 끼워 넣는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지역주민들과 직장, 방범자치회 회합에 참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방범순찰요령을 교육시키고 합동순찰활동을 한다. 정기적인 연수회를 개최하여 교육기회로 활용하고 상호정보교류도 원활히 하며, 경찰과 자율방범조직 간의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방범협회와 폭력추방추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국방범협회연합회」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에 의한 특정 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방범협회는 지역내 자율방범단체들에 대하여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5절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 실태 분석¹⁶⁾

경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평성16년) 6월에 경찰청이 완성한 ‘범죄에 강한 지역사회’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지역안전정보의 제공, 방범강습, 방범훈련과 경찰과의 합동순찰의 실시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2006년(평성17년)도에는 활동거점을 설치해서 행해지는 자주방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모델사업을 전국 100개 지구에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경찰이 소방, 학교 및 시구정촌(市區町村)과 제휴하여,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의 정비를 추진한 것이었다. 이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은 방범순찰의 출근거점, 지역안전정보의 집약·발신거점, 자주적 활동에의 참가확대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방범순찰 등의 자주방범활동에 대해서 지역안전정보의 제공, 방범강습·방범훈련이나 경찰과의 합동순찰의 실시, 방범순찰용품(회중전등, 방범부처, 완장 등)의 무상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의 방지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하는 자주방범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정보나 지

16) 일본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제공 자료.

역안전정보를 다양한 수단·매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 정보제공이 보다 구체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나 그 증감의 상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나 범행수법을 분석하여 특별히 어떠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밝혀서 보여주고, 날치기, 빈집털이, 성범죄 등으로부터 신체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 수단·매체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순회 연락하는 가정이나 사업소를 방문할 때나 자치회의 회합에 참가할 때 직접 설명하고 있고, 웹사이트나 광고지, 신문에 끼워 넣는 광고를 활용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

북해도경찰에서는 평성16년 4월부터 웹사이트에서 노상강도, 날치기, 침입절도 등 7종의 범죄 발생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상강도와 날치기에 대해서는 발생 장소가 지도상에 표시되고, 다른 5종의 범죄에 대해서는 건수, 발생의 많고 적음이 지역마다 색상이 나누어 표시되었다. 축척의 조정도 가능해서 지도를 확대하면 주변 지역의 범죄정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사례 2>

광도현경찰에서는 광도현복지보건부와 협력해서 사원, 의료기관, 실버인재센터연합회 등과 함께 고령자에게 접근해서 행해지는 사기, 악질상법, 날치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경찰본부가 사원에 대해서 제공한 정보는 사원에서의 법설(法話)시 고령자에게 전달되는 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행해진다.

제5장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면접 결과 분석

제1절 면접대상자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적이 있는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방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면접지를 대상자에게 보내서 의견을 받은 후, 전화 혹은 직접 면접 방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면접 대상자 수는 관련 학자 5명, 생활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적이 있는 경찰 간부 5명,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 30명, 자율방범대장 및 대원 10명으로 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로는 대전 그리고 중소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다. 즉, 운영예산과 금전적 보상의 문제, 지역주민 참여유인에 관한 문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제2절 운영예산과 금전적 보상에 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에 관한 문제이다.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자율방범대의 순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원들에게 수당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율방법대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관련 학자들과 경찰의 공통된 의견이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자율방법활동은 경찰업무와 연관이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자율방법대원은 예산이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만 보고 경찰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이 동일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이중적 구조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법대 지원예산을 경찰로 전용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자율방법대 교육을 비롯한 운영상 관리를 경찰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의 지원예산 규모는 자율방법대원들의 야식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액과 지역 유지나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과 협조하에 바자회 등을 열어서 홍보와 모금활동을 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방법대원들은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심지어 그 이상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보상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보험 가입률을 100%로 전원 가입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보상 체계도 제도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지역주민 참여유인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율방법대 주민 참여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법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참여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극적인 참여의 이유는 경찰과 자율방법대원 공통으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법대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경찰 혹은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순한 친목모임 형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방법업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는 자율방범대장이 적극적인 곳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이 강한 지역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율방범대장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인정해주길 바라며, 이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선 경찰관들 중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나 봉사정신을 인정해주고, 이를 위해 지역 내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알려주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참여 동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의 업무(방법업무)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율방범대원도 야간 순찰요령, 순찰시 상황대처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수립해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원과 경찰이 합동순찰을 병행하면서 대원들을 실습교육까지 받게 하면 양질의 지역 방범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 중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경찰의 의견에서 나왔다.

제4절 경찰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하여 순찰요령과 특히 야간에서의

17) 버튼(Button)은 “자율방범활동의 계획과 조직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전영실, 2005: 28. 재인용).

위급상황 대처능력, 방법장비 사용방법, 지역의 범죄발생 정보, 비행청소년 이해 그리고 호신술을 교육시키고, 경찰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를 활용하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 범죄정보를 자율방법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경찰과 자율방법대의 협력체제가 유지될 것을 지적하였다.

경찰의 입장은 대체로 자율방법대 운영예산 지원을 경찰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관련 학자들의 의견과 공통된 부분이다. 가능하다면 경찰 자체예산으로라도 경찰의 협력단체인 자율방법대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법대원의 모집과 관리도 경찰로 일원화 해야 지역방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 하여 자율방법대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 의견이 많았다.

자율방법대원은 경찰이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경찰은 지역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율방법대원들은 경찰과 잦은 접촉을 통하여 빈번한 교류를 바라고 있다. 방법장비의 지원과 자율방법대원으로서의 신분증을 경찰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자율방법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법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서 자발적인 활성화 노력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하여 방법장비,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 보상금 등에 관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과 설문조사결과, 한국 및 일본의 자율방법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자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예산문제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경찰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제1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율방법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면접결과에 의하면, 자율방법대 참가 요인으로 금전적 대가보다는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이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법대 활동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홍보매체로는 지역신문이나 지역 방송을 통하여 자율방법대활동을 알리고, 구청 혹은 동에서 발행하는 행정홍보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자율방법대 스스로 신문사이의 광고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활동상과 지역범죄정보를 곁들여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

자율방법대 참가주민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자율방법대원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율방법대원의 자격요건을 일정 기준 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방법대 참가자의 연령이 대부분 40-50대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의 참여와 참여자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이 자율방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자율방법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

현재 전국에는 지역별로 경찰행정학과와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과의 졸업생들은 경찰이나 공·사 치안부문에 종사하고자 한다. 이들 학과 소속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범죄예방활동이나 기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학생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¹⁹⁾. 이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채용시험에 경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나 무도 단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다. 여기에 일정시간 이상 지역 자율방법활동 참가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가산점 범위에 포함하면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경찰이 선수범하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추진 중인 『시민경찰학교』를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에게도 참가토록 하여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경찰업무에 대한 참관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시민경찰학교 이수학생에 한하여 자율방법대 참가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미래 자원봉사리더를 육성하는데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자율방법대원의 개인적인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정신의 취지로 인해 부정적이지만, 교통비나 야식비 정도의 의미로 개인별 지급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도화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100%로 전원 가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18) 자원봉사기본법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1항은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자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항은 “학교·직장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19) 참고로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재학생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관할지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부파출소와 합동순찰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원봉사 학점으로 1학점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05년 이후부터 중단된 것은 학생들의 순찰활동시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등이 염려되어서 였다.

제2절 예산문제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예산은 전국 3천 884개 조직에 지역별 연간 평균 약 2백97만 2천원이다. 연간 46만5천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도 있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체 회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에 의존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조직을 운영해 왔다.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에 관한 방안은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업무는 경찰과 관련되는 업무이다. 즉 예산지원과 업무협조기관이 이중적인 것이다. 이는 자율방범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을 관한 경찰서로 이관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지원과 업무협조를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예산지원과 업무협조가 이원적 체계로 되어있음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원활한 교류와 업무협조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예산문제는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자율방범 조직을 일본의 예와 같이 지역별 협회를 조직하고 지역별 협회를 통괄하는 전국적인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²⁰⁾.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2000년 8월 지역자율방범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지역방범위원회가 「경찰협력단체 정비방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지역방범협회나 전국연합회는 반드시 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하면, 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20) 일본의 「전국방범협회연합회」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받은 특정 공익증진법인(재단법인 「전국방범협회연합회」)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연합회는 일반방범 보급 활동과 전국의 방범협회 및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문화 하였다. 이 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법 제7조에 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원봉사기본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율방법대의 전국적인 단체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²¹⁾과 교육훈련 그리고 필요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²²⁾.

자율방법대를 전국적인 단체로 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화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법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²³⁾을 보완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발의 의원들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방법대와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로서의 공통성이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으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제10조 참조.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국내 자율방법대원 78.6%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2)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2006. 5. 4: 조례 제4386호 제정)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인이 2006년 6월 16일 발의함(의안번호: 4489). 참고로 제안이유는 “이 법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법을 하는 조직(이하 “자율방법대“라 한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법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법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의 원칙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방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안을 제안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로 인한 질병과 부상 혹은 사망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비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방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자율방법조직에 장비와 일정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방법협회와 전국연합회는 기업들이 찬조회원으로 참가하여 기부금을 내고 있으며, 기업 찬조회원의 기부금이 주 운영경비를 차지한다. 개별 자율방법조직은 지역 협회의 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지원, 지역사회 기업인의 후원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에 의존하며, 자체 바자회 등을 열어 모금활동을 하기도 한다. 일본의 자율방법조직들은 가능한 대원들에게 회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다.

제3절 경찰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경찰 인력은 2005년 12월 말 현재 14만 6,419명이다. 이 중에서 전·의경이 4만7,116명이고, 일반직 등이 3천967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순수 경찰인력은 9만 5,336명이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509명이다. 현재도 선진국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부의 군 인력 조정에 의해 전·의경이 경찰인력에서 완전히 제외될 경우이다. 현재 전체 경찰인력의 32.3%를 차지하고 있는 전·의경이 없다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법순찰업무와 기동대업무는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다. 추후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은 가능한 준 경찰력과 경찰 협력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법대는 경찰의 민생치안을 보조하는 협력단체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예산 지원권한이 없지만, 자율방법대를 지역사회 범죄예방 조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율방법대 교육·훈련을 체계화 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민경찰학교」에 자율방법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율방법대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이수증과 함께 자율방법대 신분증을 수여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찰행정학과 및 경호 관련 대학생들에게도 방학 중 「시민경찰학교」의 자율방법대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이수토록 한다. 일본 카스가이시에서 1995년부터 방재·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의식고양과 지역안전리

더의 육성을 목적으로 개강한 『카스가이 안전아카데미』를 모델로 하면 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법대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인센티브²⁴⁾를 부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시민경찰학교』의 자율방법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앞으로 지역의 자원봉사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경찰은 이들을 육성하는 주체가 된다.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우선, 업무와 관련하여 순찰요령과 특히 야간에서의 위급상황 대처능력, 방법장비 사용방법, 지역의 범죄발생 정보, 비행청소년 이해, 간단한 호신술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경찰은 자율방법대원들에게 교육·훈련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1개월 단위) 지역 범죄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자율방법대원들과의 상호 교류의 기회도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반사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지역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와 경찰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자율방법대원들과 시민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킬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자율방법활동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2004년 6월 ‘범죄에 강한 지역사회 플랜’을 완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안전정보의 제공, 방법강습, 방법훈련과 경찰과의 합동순찰의 실시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 모델사업을 소방, 학교, 시구청촌(市區町村)과 제휴하여 전국 100개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은 방법순찰의 출근거점, 지역안전정보의 집약·발신거점, 자주적 활동에의 참가확대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의해 지역주민에 의한 방법순찰 등의 자주방법활동에 대해서 지역 안전정보의 제공, 방법강습·방법훈련이나 경찰과의 합동순찰의 실시, 방법순찰용품(회중전등, 방법부저, 완장 등)의 무상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율방법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의경 인원감소로 인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원 인력 감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 인센티브의 내용으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학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경찰관 채용시 가산점 부여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지역과 직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된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하고 주민들 간의 친밀도가 강한 지역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²⁵⁾.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가 매우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나 결속력은 지역사회를 밝게 하고 범죄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신고나 피해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주민들 간의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 중 이전경비 내의 일반보상비 중 자율방범대원운영비를 경찰에 전용하여 예산지원과 자율방범업무가 경찰로 일원화 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지역방범협회 및 전국연합회 결성이 추진되면 이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로서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기타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활동시 시민들로부터 신분을 일일이 확인시켜줘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된 제복과 표식을 착용함으로써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안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의 순찰활동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순찰시간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간은 고령자나 주부, 야간은 대학생이나 남성으로 참가자

25) 이에 대한 연구는 제2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참조 바람.

와 시간대를 다양화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주간에 고령자나 주부들이 순찰활동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방법홍보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홍보활동도 겸할 수 있다. 참가자의 순찰희망시간대는 홈페이지나 공고문 혹은 소식지를 통해 접수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²⁶⁾. 그리고 순찰시간대는 참가자들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정할 수 있다²⁷⁾.

일본은 자율방법대에 여성 참가자들도 있다. 여성참가자들은 자율방법대 홍보지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약취 유괴 방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상범 피해방지 등을 소재로 한 종이인형극, 콩트, 방법교실, 방법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만 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일본은 「전국방법협회연합회」에서 지역방법협회를 통해 자율방법활동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안전 활동의 사례집」을 발행하여 자율방법대의 활동상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도 전국 단위의 연합회가 결성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의견을 방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방법대 사무실이 지구대나 파출소 옆의 콘센트 막사나 가건물인 경우가 많다. 자율방법대의 사무실이 지역안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의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²⁸⁾. 실 예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주민들은 2006년 9월 동네에서 성폭행 사건이

26)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재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금산군 추부파출소와 합동순찰을 할 때 1학기 별로 미리 순찰시간대와 요일을 정해서 실시한 바 있다.

27) 일본의 자율방법대는 참가자들의 순찰시간대를 산책시간이나, 주부들의 쇼핑 시간대, 조깅 시간대 등을 활용토록 하여 가능한 참가자들의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8)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1월 처음으로 전국 도시지역의 278개 동사무소에서 시범 운영됐다. 그 뒤 점차 확대돼 2006년 말 현재 전국 3천570여 개의 읍·면·동사무소 중 2천350여 곳에 주민자치센터가 마련돼 있다. 인구가 적은 일부 농촌지역 면사무소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인력은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군청으로 옮기고 남은 시설과 공간을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종전의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등록이나 호적증명서 발급 등 행정사무가 중심이었다. 이를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문화, 여가 생활의 중심으로 바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동장이 동별로 주민 중에서 최대 25명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한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1일자: A14면).

잇달아 일어나자 자치위원회 산하단체인 ‘우리 마을 가꾸기’가 중심이 되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아파트연합회 등 7개 주민단체가 참여하여 자율방범대를 결성하고 주민 300명이 매일 10인 1조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년 1월 1일자: A14면).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여 민생 치안지수를 향상시키고 준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와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자율방범대 사례분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일본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긍지는 우리로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 자율방범대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학자, 경찰, 자율방범대장과 대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와 면접대상자 그리고 대상 지역을 좀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추후의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예산문제 해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경찰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한 활성화 방안,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운영경비와 사업비 즉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본다.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우선 예산과 업무협조 기관의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지역별 단체와 전국적인 협회의 결성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제도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경찰, 지방자치단체 세 분야의 상호 역할이 어우러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경찰의 교육·훈련 체계와 범죄정보의 제공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자원이 동원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93; 이성식, 2001).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는 민생치안의 가장 기초단위인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안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자 역할을 결집하여 지역사회를 '안전과 안심이 보장된 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형기(1998). □□관의 논리 민의 논리□□, 서울: 비봉출판사.
- 구영복 외(2000). □□정치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기수(1984). “영국경찰제도의 중앙집권화추세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3집, 용인: 경찰대학.
- 김상묵·송건섭(1998).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정보□□, 제32권 제2호(1998 여름), 한국행정학회.
- 김상희·강대형·이태원(1991). “과출소 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환(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8-15, 용인: 치안연구소.
- 김 인(1997).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제31권 제4호(1997 겨울), 한국행정학회.
- 김형청(1991).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충남(2005). □□경찰학 개론□□, 서울: 박영사.
- 법무부(1988). □□각국의 사범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 서울: 법무부.
- 삼성경제연구소(1996). “21세기 범죄와 대응방향”, □□치안정책연구□□, 제6호, 치안연구소.
- 서진석(1999).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소선영(199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건중·전영실(1994). “미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안(1999).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 이성식(2001). “지역주민 방범순찰활동의 참여 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47호, 가을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성(1992). “한국사회의 변동과 범죄 현상변화에 대한 분석”, □□형사정책□□, 제6호, 서울: 한국형사정책학회.
- 임봉욱(1996). □□공공경제학□□, 서울: 비봉출판사.
- 임창호(2002). “자율방범대 참여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진환(1991). □□비교경찰제도□□, 서울: 대정.
(2006).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조병인(2001).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선우(2003).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대왕사.
- 최응렬(2005).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2005-08),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최인섭(1994).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연구보고서(93-2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선일보, 2007년 1월 1일자.

2. 외국문헌

- Banton, M.(1964).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 Bennett, Trevor.(1990). *Evaluating Neighborhood Watch*, Aldershot: Gower.
- Bobbio, N.(1989). *Democracy and Dictatorshi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zeman, B.(1987), *All Organisations are Public*, San Francisco.
- Champion, D. J. & Rush, G. E.(1997). *Policing in the Communit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Cramer, J.(1964). *The World's Police*. London: Cassel & Co.
- Cohen, S.(1979). “The punitive city: Notes on the dispersal of social

- control”, *Contemporary Crisis*, 3, 4, pp. 339-364.
- .(1985). *Visions of Social Control*, Cambridge: Polity Press.
- Critchely, T. A.(1972). *A History of Police in England and Wales*, 2nd ed. rev. Montclair: Patterson Smith.
- Dixon, D., Coleman, C. and Bottomley, K. (1990). “Consent and the Legal Regulation of Policing”, *Journal of Law and Society* 17, 3, pp.345-362.
- Donzelot, J.(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London: Hutchinson.
- Fosdick, R. B.(1972). *European Police System*. Montclair: Patterson Smith.
- Holdaway, S.(1983). *Inside the British Police*, Oxford: Basil Blackwell.
- Kasinitz, P. (ed.),(1995). *Metropolis: Centre and Symbol of our Times*, Basingstoke: Macmillan.
- Leigh, L.(1985). *Police Powers in England and Wales*, London: Butterworths.
- Manning, P.(1977). *Police Work*, Cambridge, Mass.: MIT Press.
- Robert Trojanowicz, Victor E. Kappeler, Larry K. Gaines & Bonnie Bucqueroux,(1998).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p. 3.
- Stipak, B.(1994). Are you really doing community policing? *Police Chief*, October, p. 115.
- Trojanowicz, R. C., Kappeler, V. E., Gaines, L. & Bucqueroux, B.(1998).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mpany.
- Zhao, J., Gibson C., Lovrich, N., and M. Gaffney.(2002). “Participation in Community Crime Prevention: Volunteers More or Less Fearful of Crime Than Other Citizens?”,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5(1).
- 警備保障新聞, 2006年(平成18年) 11月 5日(日曜日)号.
- 警察廳(2006). □□警察白書□□, 東京: 警察廳.
- <http://www.bohan.or.jp>

[부 록]

1. 경찰관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전화 : 031-285-2616)

※ 문의처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서진석 교수(jsseo@joongbu.ac.kr)

주 소 : 312-70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번지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연락처 : (연구실) 041-750-6214, (HP) 018-247-9337, (집) 031-602-2759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비교적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의 협력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3.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역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이다 ② 비교적 효과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비효과적이다 ⑤ 매우 비효과적이다

4. 3.의 문항에서 ③ ④ ⑤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지역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② 자율방범대원들의 자질 및 전문성 부족
 ③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 및 예산 지원 부족 ④ 유관기관들의 협조 부족
 ⑤ 기타:

5.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협조적이다 ② 비교적 협조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비협조적이다 ⑤ 매우 비협조적이다

6.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7. 다음 문항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율방범대에 지역 범죄정보 등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방법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현재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외에 경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5) 자율방범대의 모집과 관리에 관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영향을 주고 있다 ② 비교적 영향을 주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⑤ 매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8.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대학 재학) ④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4)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 5) 귀하의 근무 연수는?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6) 귀하의 근무 부서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지구대, 파출소)

9. 자율방법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을 이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자율방범대원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전화 : 031-285-2616)

※ 문의처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서진석 교수(jsseo@joongbu.ac.kr)

주 소 : 312-70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번지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연락처 : (연구실) 041-750-6214, (HP) 018-247-9337, (집) 031-602-2759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3) 내가 하는 있는 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4)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다음 문항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법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시간이 없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 방법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3) 위험부담이 있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4) 귀찮아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5)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율방법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께서는 자율방법대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홍보 전단을 통해 ② 모집 현수막을 보고 ③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 ④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⑤ 홈페이지를 통해 ⑥ 기타:
-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법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1개월 1회 ⑤ 1개월 2회 ⑥ 기타:
- 3) 귀하께서는 1회의 자율방법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 이내 ③ 3시간 이내 ④ 4시간 이내 ⑤ 5시간 이내
 - ⑥ 6시간 이내 ⑦ 기타:
- 4) 귀하께서 자율방법 활동을 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6시-12시 이전 ② 오후1시-6시 이전 ③ 오후6시- 10시 이전
 - ④ 오후10시-새벽2시 이전 ⑤ 새벽2시-오전6시 이전
 - ⑥ 기타:
- 5) 귀하께서는 어떤 복장으로 자율방법 활동을 하십니까?
 - ① 평상복 차림으로 ② 평상복에 자율방법대 모자나 완장을 차고
 - ③ 통일된 자율방법대 유니폼으로 ④ 기타:
- 6) 귀하께서는 자율방법대원이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 7) 귀하께서는 순찰 등 자율방법 활동을 할 때 방범장비(호루라기, 방범봉, 가스총 등)를 지니고 하십니까?
 - ① 항상 지닌다 ② 가끔 지닌다 ③ 상황에 따라 지닌다
 - ④ 항상 지니지 않는다 ⑤ 기타:
- 8) 귀하께서는 경찰과 합동 순찰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한다 ② 비교적 자주한다 ③ 가끔한다
 - ④ 비교적 자주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 9) 귀하께서는 자율방법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느낀다 ② 비교적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 10) 귀하께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통하여 지역 범죄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많이 알게 되었다 ② 비교적 알게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알지 못하였다 ⑤ 전혀 알지 못하였다
- 11) 귀하께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한 이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감소하였다 ② 비교적 감소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⑤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 1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한 이후 보람과 긍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① 매우 느끼고 있다 ② 비교적 느끼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느끼고 있지 않다 ⑤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 13) 귀하께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한 이후 가족과 이웃의 존경을 어느 정도 받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많이 받게 되었다 ② 비교적 받게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받지 못하였다 ⑤ 전혀 받지 못하였다
- 14) 귀하께서는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비교적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5)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녀야 할 요건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리더쉽 ② 방법 전문지식 ③ 경제력
 ④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력 ⑤ 기타:
7. 귀하께서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비교적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 귀하께서는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인정하고 있다 ② 비교적 인정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9. 귀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율방범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문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지역 주민 ④ 정부 ⑤ 시민단체
11.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등 예산을 어느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지역 주민의 기부금 ④ 정부 ⑤ 지역 기업의 협찬
⑥ 기타:
1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정부 ④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⑤ 기타:
13. 귀하께서 활동하고 계신 자율방범대에 별도 사무실(모임 장소)이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① 별도 공간이 없다 ② 컨테이너 박스로 있다 ③ 방법초소를 이용한다
④ 대원 중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한다 ⑤ 기타:

14. 귀하께서 활동하고 계신 자율방범대에 부족한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복수 답변 가능)

- ① 특별히 운영경비가 필요없다 ② 대원들의 회비로 ③ 대장의 기부금으로
- ④ 지역 기업의 찬조금으로 ⑤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 ⑥ 기타:

15.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대학 재학)
- ⑤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4) 귀하의 직업은?

-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 ③ 생산·관리 ④ 판매·서비스
- ⑤ 공무원 ⑥ 자영업 ⑦ 기타:

5) 귀하의 월 소득 수준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③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⑦ 500만원 이상

6) 귀하께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는?

- ① 초등 이하(명) ② 중학교(명) ③ 고등학교(명)
- ④ 대학교(명) ⑤ 성인 자녀(명)

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특성은?

- ① 일반주택가 ② 아파트 단지 ③ 상가 ④ 유흥가 ⑤ 공장지대 ⑥ 농촌지역
- ⑦ 기타:

8)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년 개월

16.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을 이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일반주민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9-70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전화 : 031-285-2616)

※ 문의처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서진석 교수(jsseo@joongbu.ac.kr)

주 소 : 312-70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번지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연락처 : (연구실) 041-750-6214, (HP) 018-247-9337, (집) 031-602-2759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비교적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2. 다음은 현재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동네는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②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발생하지 않았다 ⑤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 귀하의 가족 중에 지난 3년간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위 2)번 문항에서 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의 경우 어떤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 ① 절도 ② 강도 ③ 폭행 ④ 강간 ⑤ 차량도난 ⑥ 살인 ⑦기타()

4)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시설(가로등, CCTV 등)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는 편입니까?

- ① 절도 ② 강도 ③ 폭력 ④ 살인 ⑤ 기타()

6)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이나 활동이 많은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방범기기의 설치 정도(CCTV, 비상벨, 방범등, 경보장치 등)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2) 개인용 방범장비 소지(가스총, 전기충격기, 호루라기 등)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3) 집에 경비업체(SECOM, CAPS 등) 서비스 받음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4) 자녀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정도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5)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 정신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6)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 간의 협의 정도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7) 주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참여도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보통
④ 비교적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4. 다음 문항은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 경찰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협조하고 싶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3) 경찰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게 대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4)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믿음이 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다음 문항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시간이 없어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 방법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3) 위험부담이 있어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4) 귀찮아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5)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다음 문항은 자율방법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자율방법활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나는 자율방법활동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나는 자율방법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편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4) 나는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고, 주위에 권하고 싶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높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율방법활동에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귀하께서는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하고 있다 ② 비교적 인정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문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지역 주민 ④ 정부 ⑤ 시민단체
9.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등 예산을 어느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지역 주민의 기부금 ④ 정부 ⑤ 지역 기업의 협찬
⑥ 기타:
10.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경찰 ② 자치단체 ③ 정부 ④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⑤ 기타:
11.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대학 재학)
⑤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 4)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 ③ 생산·관리 ④ 판매·서비스

⑤ 공무원 ⑥ 자영업 ⑦ 기타:

5) 귀하의 월 소득 수준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6) 귀하께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는?

- ① 초등 이하(명) ② 중학교(명) ③ 고등학교(명)
 ④ 대학교(명) ⑤ 성인 자녀(명)

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특성은?

- ① 일반주택가 ② 아파트 단지 ③ 상가 ④ 유흥가 ⑤ 공장지대 ⑥ 농촌지역
 ⑦ 기타:

8)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년 개월

12.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을 이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